www.ssc.go.kr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17.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협의 개요 1~4p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제도 의의 2. 제도의 목적 3. 법적 근거 〈신 설〉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제도의 정의 2. 제도의 목적 3.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013.1.27. 시행, 2012.1.26.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협의 대상 5~12p	**Ⅱ. 협의 대상** 2. 신설·변경의 의미 ● (변경)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전달체계** 등이 바뀌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예 시 1) **대상자 변경** 2) **재정부담 수준 변경** 3) **지원수준의 변경** 4) **전달체계 변경** 〈신 설〉	**Ⅱ. 협의 대상** 2. 신설·변경의 의미 ● (변경)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전달체계** 등이 바뀌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변경' 예시** 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2) **재정부담 수준 변경** 3) **지원수준의 변경** 4) **전달체계 변경**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변경' 사업 중 협의제외대상>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변경'** 사업의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 ①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의 단순 변동**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등 ② 신설 또는 변경사업으로 **기협의 완료한 동일 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액수'의 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복지부와 협의완료한 사업내용 중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항목 등의 추가 또는 확대 없이 동일 대상에 동일 항목으로 지원하되, **급여 액수만 증감한 경우** ☞ 예 : '17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0만원(자부담 3만원) 행복바우처 지급 → '18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2만원(자부담 3.6만원) 행복바우처 지급(2만원 증액), 그 외 지원항목 등 사업내용 동일
	3. 협의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신 설〉	**3. 협의 제외대상** ● **(민간재원사업)**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 기부금 지정 사업 등과 같이, 지자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재원의 전부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으로 책정된 사업**도 협의제외대상임
	●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법률/조례안)**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협의대상**임 * 다만,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도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협의대상**임 〈삭 제〉
	●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예산 등의 변동**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예산변동)**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의 변동**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 설〉	● **(급여액수만 변동)** '신설 또는 변경'사업으로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액수'**만 **변동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복지부와 협의완료한 사업내용 중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항목 등의 변경 또는 확대 없이 동일 대상에 동일 항목으로 지원하되, 급여액수만 증감한 경우 ☞ 예 : '17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0만원(자부담 3만원) 행복바우처 지급 → '18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2만원(자부담 3.6만원) 행복바우처 지급(2만원 증액), 그 외 지원항목 등 사업내용 동일
	●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현행과 동일)	●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현행과 동일)
	〈신 설〉	● **(보훈사업)** 보훈수당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대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지원 사업 **(지자체 사업에 한함)**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지자체 보훈사업 등은 협의대상에서 제외(관련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참고) **보훈사업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과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 관련 사업 대상자 중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향후 신규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지원금액의 반영여부**는 **중앙부처 담당 사업과** 또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확인 후 지급(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업지침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등 참고)
	〈신 설〉	● **(국고보조사업의 추가예산편성사업) 국고보조사업 중 실제 수요 대비 매칭된 사업량이 부족**하여 **지자체**가 동일한 사업내용(선정기준, 지원수준 등)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 ☞ 예 : 노인일자리(공익활동)에 대한 지자체 추가예산 편성 등 ● **(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된 지자체 의무사업)** 지자체 사업시행에 대한 **주요내용**(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이 중앙사업지침에**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기속되어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지자체 사업**(예산집행만 시행)의 경우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협의대상에서 제외** ☞ 예 :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만기퇴소아동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 단, **중앙사업지침 내용과 상이(변경, 확대 등)**하거나 중앙사업지침이 있으나 포괄적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주요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을 정하여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임** ☞ 예 : ①지침내용과 상이한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시 추가지원(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금 일부 추가 지원), ② 세부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 지자체 취약계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노인복지사업 지침에 포괄적 가이드라인 참고) 등
	●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단년도 사회보장사업**	● **(단년도 사업)**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단년도 사회보장사업** - 일회성 성격의 **주민(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등도 협의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 될 경우 협의대상
	〈신 설〉	● **(협의제도 시행 이전 사업)협의제도 시행('13.1.27)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지속·유지되고 있는 사업 - 제도 시행 이후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협의대상
	〈신 설〉	●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사업 중 **지자체 법정배분사업**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 부서의 변경 및 설치·운영** ●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설·변경 협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참고	그간 협의요청 사업 중 반려처리 된 사례** **협의대상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교통수당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경로당 대표자 활동장려수당,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경로당 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차등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기대상자 쉼터 운영,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장수식당 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지역주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입세대 지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헬스케어센터 운영지원, 행정인턴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일자리 창출 연계 산업체 지원, 장수축하금 등	〈현행 동일〉 **참고	그간 협의요청 사업 중 반려처리 된 사례** **협의대상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교통수당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경로당 대표자 활동장려수당,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경로당 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차등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위기대상자 쉼터 운영,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100원 버스 사업, 여성안심택시운영사업,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장수식당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지역주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입세대 지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헬스케어센터 운영지원, 행정 인턴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일자리 창출 연계 산업체 지원, 기업 소속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층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사업 등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협의 절차 13~17p	**Ⅲ.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 (중략) ● **(협의요청시기)**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내에 협의요청 하지 않은 건은 협의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시행시기 유예 -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 설〉 ● **(협의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협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신 설〉	**Ⅲ.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 (중략) ● **(협의요청시기)**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내에 협의요청 하지 않은 건은 협의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시행시기 유예 -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앙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4.30)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기한(9.1)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협의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제도나 사업의 도입으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협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 예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이 상당기간 필요한 사업 등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2. 협의의 진행 ● (중략) ● (협의결과 통보)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o **동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o **변경보완 :**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영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시(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 요청) - 추가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추가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o **부동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 요청 -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협의요청기관이 수용할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협의요청기관이 부동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2. 협의의 진행** ● (중략) ● (협의결과 통보)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o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o **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협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삭 제〉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신 설〉	**3. 조정의 진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 장 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되고, 해당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함(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그림] 협의 미성립시 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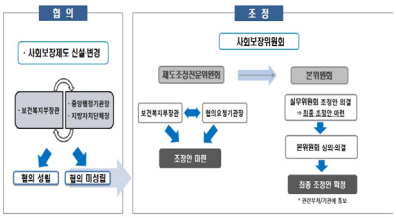
행정 사항 24~27p	Ⅵ. 행정 사항 1. 지침 제작 및 홈페이지 활용	Ⅵ. 행정 사항 **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신 설〉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www.ssc.go.kr) 를 통해 관련자료 검색 및 활용 -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①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메인홈페이지 → 사회보장정보 → 발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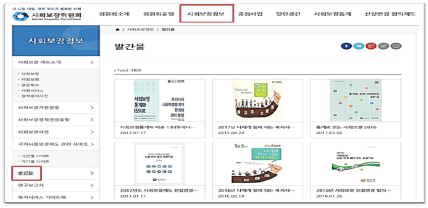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결과검색 (협의완료사업 조회가능) - 메인홈페이지 → 신설변경 협의제도 → 신설변경 협의제도 결과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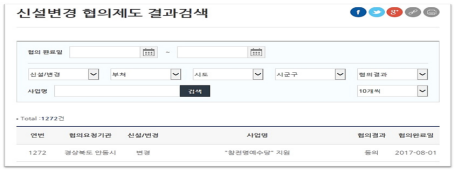 ③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 안내 및 통계 활용 - 메인홈페이지 → 신설변경 협의제도 → 신설변경 협의제도 안내 / 통계

<table>
<tr><th>구분</th><th>개정 전(2017년)</th><th>개정 후(2018년)</th></tr>
<tr><td></td><td>2. 2017년 교육 수요조사
● 협의의 수용성을 높이고,'17년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예정</td><td>2. 2018년 교육 수요조사
● 협의의 수용성을 높이고, '18년 지침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수요가 있는 기관의 요청 시, 전국 지차체 담당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가능
〈이하 동일〉</td></tr>
<tr><td>서식
31~46p</td><td>【서식 1】</td><td>【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r><td colspan="2">작성자</td><td>○○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td></tr>
<tr><td colspan="2">신설/변경여부</td><td>☐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____회)</td></tr>
<tr><td colspan="2">근거</td><td>☐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td></tr>
<tr><td rowspan="3">사업 유형</td><td>목적별</td><td>☐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td></tr>
<tr><td>대상자별</td><td>☐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td></tr>
<tr><td>예산기준별</td><td>☐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td></tr>
<tr><td rowspan="4">급여</td><td>기준</td><td>☐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td></tr>
<tr><td>유형</td><td>☐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td></tr>
<tr><td>주기</td><td>☐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td></tr>
<tr><td>횟수</td><td>총_____회</td></tr>
<tr><td rowspan="5">전달 체계</td><td>신청</td><td>☐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기타( )</td></tr>
<tr><td>조사</td><td>☐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td></tr>
<tr><td>결정</td><td>☐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td></tr>
<tr><td>지급</td><td>☐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td></tr>
<tr><td>사후관리</td><td>☐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td></tr>
</table>
</td></tr>
</table>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주요 내용</th><th></th></tr>
<tr><td rowspan="2">복지재원</td><td>주 소요재원</td><td>☐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td><td>비율___%</td></tr>
<tr><td>부 소요재원</td><td>☐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td><td>비율___%</td></tr>
<tr><td colspan="2">지원규모</td><td colspan="2">총_____명/가구/개소/개</td></tr>
<tr><td colspan="2">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td><td colspan="2">☐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td></tr>
</table>

〈내용추가〉 2. 제도(사업) 개요

*사업 목적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r><td colspan="2">시행예정일/ 협의요청일</td><td>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협의요청일)</td></tr>
<tr><td colspan="2">제도 신설 필요성</td><td>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td></tr>
<tr><td colspan="2">관련규정</td><td>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td></tr>
<tr><td colspan="2">사업목적</td><td>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td></tr>
<tr><td rowspan="2">지원 대상</td><td>선정기준</td><td>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td></tr>
<tr><td>대상규모</td><td>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td></tr>
<tr><td rowspan="2">지원 내용</td><td>지원유형</td><td>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td></tr>
<tr><td>지원수준</td><td>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td></tr>
<tr><td rowspan="2">전달 체계</td><td>지원절차</td><td>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td></tr>
<tr><td>수행기관</td><td>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td></tr>
<tr><td rowspan="2">소요 재원</td><td>총규모</td><td>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td></tr>
<tr><td>재원별 규모</td><td>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td></tr>
<tr><td rowspan="2">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td><td>필요 정보</td><td>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td></tr>
<tr><td>연계 방안</td><td>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td></tr>
</table>

〈신설〉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과 동일)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개정 전(2017년)</th><th>개정 후(2018년)</th></tr>
<tr><td></td><td colspan="2">●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와 <u>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u> 기존제도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을 판단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 <u>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등 기술</u>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제도 신설·변경과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시행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계획 또는 협의 내용을 기재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td><td></td></tr>
<tr><td>●중략</td><td colspan="2">●(현행과 동일)</td><td></td></tr>
<tr><td>【서식 2】</td><td colspan="2">【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u>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u>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r><td colspan="2">작성자</td><td>○○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td></tr>
<tr><td colspan="2">신설/변경여부</td><td>☐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____회)</td></tr>
<tr><td colspan="2">근거</td><td>☐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td></tr>
<tr><td rowspan="3">사업 유형</td><td>목적별</td><td>☐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td></tr>
<tr><td>대상자별</td><td>☐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td></tr>
<tr><td>예산기준별</td><td>☐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td></tr>
<tr><td rowspan="4">급여</td><td>기준</td><td>☐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td></tr>
<tr><td>유형</td><td>☐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td></tr>
<tr><td>주기</td><td>☐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td></tr>
<tr><td>횟수</td><td>총_____회</td></tr>
<tr><td rowspan="2">전달 체계</td><td>신청</td><td>☐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기타( )</td></tr>
<tr><td>조사</td><td>☐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td></tr>
</table></td><td></td></tr>
</table>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구 분		주요 내용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___%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___%
지원규모		총_____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	

〈내용추가〉
***사업 목적**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이전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이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이후	
	지원수준	이전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이후	
	수행기관	이전	
		이후	

<table>
<tr><th>구분</th><th>개정 전(2017년)</th><th>개정 후(2018년)</th></tr>
<tr><td></td><td>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주요 내용</th></tr>
<tr><td rowspan="4">소요 재원</td><td rowspan="2">총규모</td><td>이전</td><td>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td></tr>
<tr><td>이후</td><td>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td></tr>
<tr><td rowspan="2">재원별 규모</td><td>이전</td><td></td></tr>
<tr><td>이후</td><td></td></tr>
<tr><td>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td><td>필요 정보</td><td colspan="2"></td></tr>
<tr><td></td><td>연계 방안</td><td colspan="2"></td></tr>
</table>
</td><td></td></tr>
<tr><td></td><td>〈신설〉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과 동일)
●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와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기존제도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을 판단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등 기술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제도 신설·변경과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시행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계획 또는 협의 내용을 기재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 중략</td><td>● (현행과 동일)</td></tr>
<tr><td>【서식 3】</td><td>【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보건복지부 ⇒ 각 부처, 지자체)
<table>
<tr><th>제도(사업)명</th></tr>
</table>
<table>
<tr><td>검토결과</td><td>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등</td></tr>
<tr><td>필수검토사항</td><td>협의요청기관이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td></tr>
<tr><td>검토의견</td><td>반영여부를 협의요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td></tr>
</table>
</td><td></td></tr>
</table>

구분	개정 전(2017년)		개정 후(2018년)
부록 49-118p	**〈부록 1~6〉**	〈부록1〉 2016년 사전협의 안건 (2016.12.15. 기준) 〈부록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7.1.1. 기준)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신설〉 〈신설〉 〈신설〉	〈부록1〉 2017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 (2017.12.6. 기준) 〈부록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 (2018.1.1.기준)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 (시·도) **〈부록4〉 그 간('13~'17)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부록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부록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CONTENTS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 1

Ⅱ. 협의 대상 ····· 5

Ⅲ. 협의 절차 ····· 13

Ⅳ. 협의 기준 ····· 18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 22

Ⅵ. 행정 사항 ····· 24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 31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 38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 45

【서식 4】 회신 양식 ····· 46

부 록

【부록 1】 2017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7.12.6. 기준) ····· 49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8.1.1. 기준) ····· 83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 93

【부록 4】 그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 94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96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 106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제도의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2 제도의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목적
  -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 억제 등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

-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제도 운영방안을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국가·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추구

3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013.1.27. 시행, 2012.1.26.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11.30.〉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9.〉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Ⅱ. 협의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1 사회보장제도

-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호)' 및 '**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2 신설·변경의 의미

-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기관에서 동일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에 해당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

-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중앙사업의 경우),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전달체계** 등이 바뀌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변경' 예시

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소득기준, 연령,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① 대상자 **소득수준 변경** : 중위소득 30%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등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기준** 변경 : 소득 →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 소득인정액 등
   ③ **연령기준**변경 : 3세 미만 → 5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등
   ④ **장애정도**변경 : 장애1~2등급 → 1~3등급, 장애1~3등급 → 등록장애인 등
   ⑤ **가구특성**변경 : 청소년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구 등

2) **재정부담 수준 변경** : 재원조달방법, 국고보조율 등의 재원 변경
   ① 재원조달방법 변경 : 전액 정부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등
   ② 국고보조율 변경 : 국고보조율 50% → 국고보조율 60% 등(중앙부처 사업에 한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의 변경은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원수준의 변경** :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① 급여수준 변경 : 1인당 월 5만원 → 월 6만원, 가구당 연 20만원 → 연 30만원 등
   ② 급여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 교육비 →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③ 급여 형태 변경 : 현금 → 바우처, 현금 → 비용면제 등

4) **전달체계 변경**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기관 등의 변경
① 급여 신청기관 변경 : 특별행정기관 → 시군구, 공공기관 → 읍면동 등
② 급여 제공기관 변경 : 읍면동 → 학교, 고용센터 → 읍면동 등

<'변경' 사업 중 협의제외대상>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변경'** 사업의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

①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의 단순 변동**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등

② 신설 또는 변경사업으로 **기협의 완료한 동일 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액수'의 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복지부와 협의완료한 사업내용 중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항목 등의 추가 또는 확대 없이 동일 대상에 동일 항목으로 지원하되, **급여 액수만 증감한 경우**
☞ 예 : '17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0만원(자부담 3만원) 행복바우처 지급 → '18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2만원(자부담 3.6만원) 행복바우처 지급(2만원 증액), 그 외 지원항목 등 사업내용 동일

3 협의 제외대상

- **(민간재원사업)**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 기부금 지정 사업 등과 같이, 지자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재원의 전부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으로 책정된 사업**도 협의제외대상임

- **(법률/조례안)**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협의대상**임

- **(단순예산변동)**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의 변동**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급여액수만 변동)** '신설 또는 변경'사업으로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액수'**만 **변동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복지부와 협의완료한 사업내용 중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항목 등의 변경 또는 확대 없이 동일 대상에 동일 항목으로 지원하되, **급여액수만 증감한 경우**

  ☞ 예 : '17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0만원**(자부담 3만원) 행복바우처 지급 → '18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2만원**(자부담 3.6만원) 행복바우처 지급(2만원 증액), **그 외 지원항목 등 사업내용 동일**

-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사회보장시설, 기관, 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사회보장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함

  ☞ 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법령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과 조례 포함

  * 사회보장 관련법령 페이지 참조

- 고유사업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해당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을 의미함

  ☞ 예 :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 이용료(본인부담금) 지원은 협의 대상

-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대상**임

● **(보훈사업)** 보훈수당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대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지원사업 **(지자체 사업에 한함)**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지자체 보훈사업 등은 협의대상에서 제외(관련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참고)

보훈사업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과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 관련 사업 대상자 중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향후 신규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지원금액의 반영여부는 중앙부처 담당 사업과 또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확인 후 지급(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업지침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등 참고)

● **(국고보조사업의 추가예산편성사업) 국고보조사업 중 실제 수요 대비 매칭된 사업량이 부족**하여 **지자체**가 동일한 사업내용(선정기준, 지원수준 등)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

☞ 예 : 노인일자리(공익활동)에 대한 지자체 추가예산편성 등

- **(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된 지자체 의무사업)** 지자체 사업시행에 대한 **주요내용**(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이 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되어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지자체 사업**(예산집행만 시행)의 경우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협의대상에서 제외**

  ☞ 예 :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만기퇴소아동 또는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 단, **중앙사업지침 내용과 상이(변경, 확대 등)**하거나 중앙사업지침이 있으나 포괄적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주요내용(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을 정하여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임**

    ☞ 예 : ①지침내용과 상이한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시 추가지원(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금 일부 추가 지원), ② 세부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 지자체 취약계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노인복지사업 지침에 포괄적 가이드라인 참고) 등

- **(단년도 사업)**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단년도 사회보장사업**
  - 일회성 성격의 **주민(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등도 협의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 될 경우 협의대상

- **(협의제도 시행 이전 사업)협의제도 시행('13.1.27)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지속·유지되고 있는 사업
  - 제도 시행 이후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협의대상

-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사업 중 **지자체 법정배분사업**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 부서의 변경 및 설치·운영**

-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설·변경 협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참고 | 그간 협의요청 사업 중 반려처리 된 사례

협의대상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교통수당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경로당 대표자 활동장려수당,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경로당 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차등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위기대상자 쉼터 운영,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100원 버스 사업, 여성안심택시운영사업,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장수식당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지역주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입세대 지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헬스케어센터 운영지원, 행정 인턴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일자리 창출 연계 산업체 지원, 기업 소속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층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사업 등

참고 | 사회보장 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구강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Ⅲ.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 **(협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 제출 시 자치단체간의 협의결과나 의견을 첨부
    * 예) 경기도 ○○시가 신설하고자 하는 제도의 재원을 경기도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 경기도와의 협의결과를 첨부
  -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참조
- **(협의요청시기)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내에 협의요청 하지 않은 건은 **협의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시행시기 유예**
  -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앙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4.30)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기한(9.1)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협의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제도나 사업의 도입으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 예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이 상당기간 필요한 사업 등
- **(자료보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요청기관에 자료 제출 및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 누락 등에 따른 **자료보완 기간**은 **협의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 **(포함내용)**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은 **(서식 1,2)**의 양식에 따라 작성

<참고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절 차	주요 내용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협의회 검토·협의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안건 검토·협의** *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협의회 구성·운영
결과 통보 (복지부 → 요청기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 **· 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 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관할 시·도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협의요청기관 및 **관할 시·도**)

2 협의의 진행

- **(협의절차) 협의요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과정에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협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협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서식3)
  - 협의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협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3 조정의 진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 장 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되고, 해당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함(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그림] 협의 미성립시 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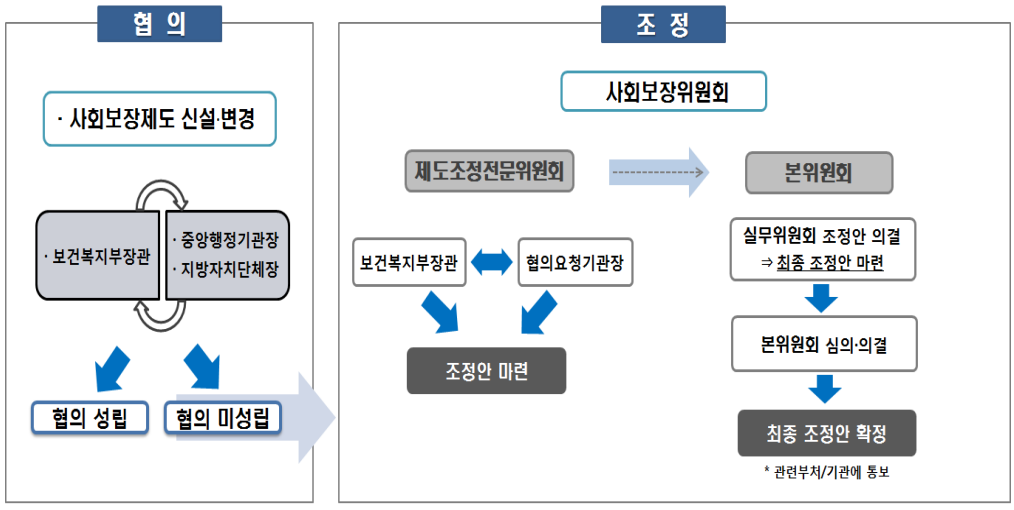

Ⅳ. 협의 기준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진행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기타	⑭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⑮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 사업기획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규정이 있는지 여부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하도록 규정 또는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는 경우 근거조항 명시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등 지역특수성**

-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수요파악 자료 등 지역에서 문제가 대두되게 된 배경이나 경위

  * 국가 또는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쟁점 여부,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범위와 규모 등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지역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사유 등 **기존제도의 한계에 대한 평가** 내용

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등 제도(사업) 도입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확보 여부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 특히,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제도**인 경우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타당성, 기대효과, 사업설계 분석** 등에 대한 협의기관의 분석결과 **연구용역 결과** 등 제출

2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서비스 제공 여부**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

  * 동일수급자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예를 들어 출산비용지원에 있어 산모, 배우자, 출생아를 지원하는 경우 유사중복, 노인에 대한 현금지원에 있어 노인 본인에 대한 지원과 부양자에 대한 지원도 유사중복에 해당

③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개별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선정기준의 구체성,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등)

④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할 수 있음

3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급여의 통합제공과 제도 간 연계를 위해 새로운 전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전달체계를 활용하되 수급대상자·예산규모·사업량에 비례해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검토

② **수혜자 접근성(편의), 급여제공의 적시성**

- 신청기관의 지역적 분포 검토, 급여·서비스의 제공 기관이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수급대상자에 대한 필요정보(소득, 재산, 자격, 수혜급여 이력 등) 파악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①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체예산 중 신설·변경 사업예산 비율 등 검토

② **재정집행의 효율성**

- 지자체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로 특히 국가사업의 지방비 분담에 문제가 없다는 점 확인

5 기타

①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경우 적정급여 수준에 대한 추가적 고려 검토

② **제도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협의 후 사업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재원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1 이행 점검

- **(예산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예산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예산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자료요구 및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완료 사항 등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집행 현황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협의요청 한 사업의 예산안 의결 현황 제출(관련서식 추후 배포)

    * 당해연도 협의요청 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제출

-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 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협의 결과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예산편성지침 개정**('16년~)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목록(2018.1.1.기준) 참조

  -「'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동의( ) / 부동의( )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기재			

2 협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등

●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16.1.1 시행)**에 따라**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의 적용사례 및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나열(해당내용은 9호)

9.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배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협의 의무 위반 지자체에 대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 가능**('16년~)

* ('18년 예산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준수·정책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중앙부처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Ⅵ. 행정 사항

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를 통해 관련자료 검색 및 활용

-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①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메인홈페이지 → 사회보장정보 → 발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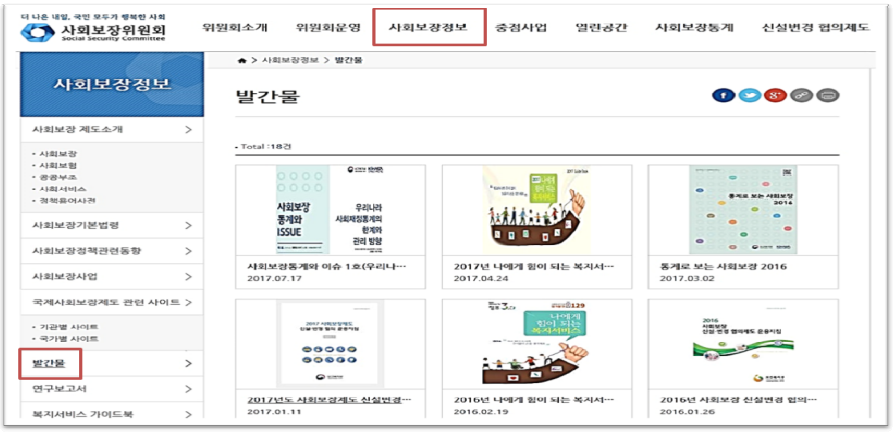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결과검색 (협의완료사업 조회가능)

- 메인홈페이지 → 신설변경 협의제도 → 신설변경 협의제도 결과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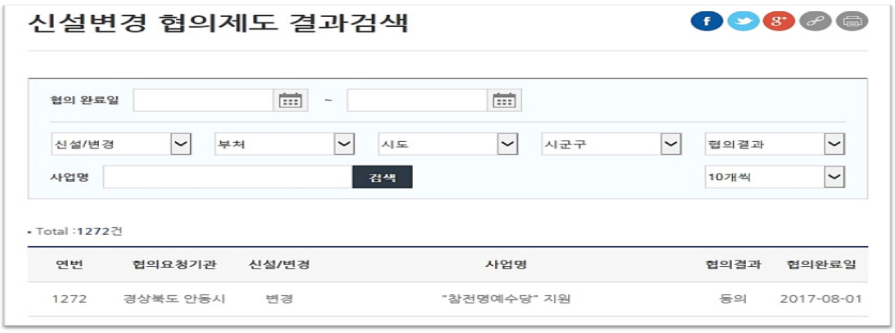

③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 안내 및 통계 활용

- 메인홈페이지 → 신설변경 협의제도 → 신설변경 협의제도 안내 / 통계

2 2018년 교육 수요조사

● **협의의 수용성을 높이고, '18년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수요가 있는 기관의 요청 시,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가능**

【2018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안)】

◉ **교육대상** : 지자체 공무원(시도 권역별 교육 원칙)
◉ **교육방법** : 방문교육, 강의식(PPT자료 활용)
◉ **교육시간** : 1~2시간(요청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강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또는 담당사무관)
◉ **주요내용** : 2018년 협의 운용지침 설명, 협의요청사업 컨설팅 등

●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18년 교육수요를 파악**, 아래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에 **제출 (필요시)**

*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구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제출**

< 2018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 수요조사(서식) >

신청기관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장소	부서명	담당자(연락처)

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참조

●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전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 사전 이행 요청**

- 「사회보장급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인 **지자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행복e음 활용 승인 신청 가능**

- 이에,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결과 포함하여 요청**

  * 신설·변경 **협의요청서**(서식1,2) **제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협의완료** 및 **협의결과 통보**(서식3) →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 신설 제도) ····· 31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 변경 제도) ····· 38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 45

[서식 4] 회신 양식 ····· 46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설 제도(사업)명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____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_____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___%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___%
지원규모		총_____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재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제공
-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와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기존제도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을 판단

작 성 방 법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등 기술
-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 제도 신설·변경과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시행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계획 또는 협의 내용을 기재
-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지역의 특수성

-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해당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 지역적 문제, 지역 수요 등 지역 내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개입의 필요성

작 성 방 법

-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 (예: 관할지역 내 사건·사고, 재난 등)를 기술
- ✔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
- ✔ 사회문제의 심각성(특성, 크기 등을 포함),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및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다른 제도의 조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 국내(중앙부처, 다른 지자체)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
-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신설·변경 제도가 적정한 대안으로 구상되었는가를 판단

작 성 방 법

-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존 재정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추가재원 확보 이외에도 신설·변경 제도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분석하여 판단

작 성 방 법

- ✔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상세하게 기술
-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서술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신설·변경 제도가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판단
-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작 성 방 법

-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 제도 변경으로 전달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 제도 신설·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 인적사항, 가구구성 현황, 소득, 재산 등 필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작 성 방 법

-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
-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현행 비용과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참고자료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변경 제도(사업)명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____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_____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___%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___%
지원규모		총_____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이전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이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이후	
	지원수준	이전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이후	
	수행기관	이전	
		이후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재원별 규모	이전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제공
-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고려와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기존제도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을 판단

작 성 방 법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등 기술
-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 제도 신설·변경과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시행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계획 또는 협의 내용을 기재
-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지역의 특수성

-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해당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 지역적 문제, 지역 수요 등 지역 내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개입의 필요성

작 성 방 법

-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 (예 : 관할지역 내 사건·사고, 재난 등)를 기술
- ✔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
- ✔ 사회문제의 심각성(특성, 크기 등을 포함),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및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다른 제도의 조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 국내(중앙부처, 다른 지자체)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
-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신설·변경 제도가 적정한 대안으로 구상되었는가를 판단

작 성 방 법

-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존 재정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추가재원 확보 이외에도 신설·변경 제도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분석하여 판단

작 성 방 법

- ✔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상세하게 기술
-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서술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신설·변경 제도가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판단
-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작 성 방 법

-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 제도 변경으로 전달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 제도 신설·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 인적사항, 가구구성 현황, 소득, 재산 등 필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작 성 방 법

-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
-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현행 비용과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참고자료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보건복지부 ⇒ 각 부처, 지자체)

제도(사업)명

검토결과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등*
필수검토사항	*협의요청기관이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검토의견	*반영여부를 협의요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서식 4】 회신 양식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제도(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한 협의요청기관의 수용여부*

복지부 검토의견	
협의요청기관 회신의견	

부 록

[부록 1] 2017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7.12.6. 기준) ····· 49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8.1.1. 기준) ····· 83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 · 도) ····· 93

[부록 4] 그 간('13–' 17)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 94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96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 106

【부 록1】

2017년 협의완료 안건(2017.12.6. 기준)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동의
2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동의
3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동의
4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동의
5		퇴직연금복지과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동의
6	교육부	유아정책교육과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동의
7		학생복지정책과		○	‘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동의
8			○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미래인재발굴·육성사업)	동의
9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동의
1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동의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동의
12		녹색도시과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동의
1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동의
14		도서관정책기획단	○		고령 친화 도서관 조성	동의
15		예술정책과 재정담당관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동의
16	복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	동의
17		기초연금과		○	기초연금지급	동의
18		아동복지		○	아동발달지원 계좌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9		정책과	○		아동수당 지급	동의
20			○		「다함께 돌봄」사업	동의
21		장애인 서비스과		○	장애인활동지원	동의
22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소득기준 폐지 (공공후견지원, 부모상담지원, 가족휴식지원)	동의
23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통합운영 (부모교육지원+가족휴식지원)	동의
24		장애인자립 기반과		○	장애인연금	동의
25		장애인 정책과	○		장애인건강검진사업	동의
26			○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동의
27			○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지원 사업	동의
28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수요 관리과		○	전력효율 향상(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동의
29		에너지자원 정책과		○	에너지바우처	동의
30	여성 가족부	청소년 정책과		○	청소년 건강지원(보건복지부'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과 동일)	동의
31	통일부	교육기획과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주거지원금) 인상	동의
32	해양 수산부	소득복지과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동의
33			○		가사도우미	동의
34	강원도		○		산모 건강관리 지원	동의
35			○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지원	동의
36			○		북한이탈대학생 교재비 지원	동의
37			○		보호아동 자립지원 (자립정착금)	동의
38			○		초기정착 북한이탈주민 필요물품 지원	동의
39				○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동의
40			○		저소득한부모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	동의
41			○		여성농업인 출산휴가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42				○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43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동의
44		○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동의
45		○		다문화 청소년 예술단 창단 지원	동의
46		○		부모 · 부부교육지원	동의
47		○		아이돌보미 교통비지원	동의
48		○		청소년쉼터 입소자 지원(가출청소년 자립지원)	동의
49			○	초기 전입 북한이탈주민가구 물품 지원	동의
50			○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동의
51			○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비 지원 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52			○	북한이탈주민(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	동의
53			○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확대 지원	동의
54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부담금 지원	동의
55		○		조부모와 함께 하는 1+1 덤하우스 공급	변경보완 후 동의
56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대상 확대)	동의
57		○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사업	반려
58	경기도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59			○	2017년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동의
6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동의
61		○		청년구직지원금	동의
62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동의
63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동의
64		○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사업	동의
65		○		한방 난임사업 지원	동의
66		○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	변경보완 후 동의
67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동의
68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	동의
69		○		사회적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 시범사업	동의
70		○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	반려
71		○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시범운영	반려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72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동의
73		○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동의
74		○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동의
75			○	청년구직지원금	동의
76		○		일하는 청년 시리즈	동의
77			○	일하는 청년통장	변경보완 후 동의
78		○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지원	동의
79		○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요금 면제(할인)	부동의
80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동의
81			○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동의
82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동의
83		○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반려
84		○		카네이션 마을(주거안전시설)	동의
85	경상남도		○	입양아동 양육수당	동의
86			○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동의
87		○		치매 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	동의
88			○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	동의
89			○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동의
90	경상북도	○		2017 경북 청년-기업 매칭 협력사업	동의
91		○		2017 청년취업 미래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	동의
92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동의
93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동의
9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동의
95	경상북도 교육청	○		2017년 다자녀 고등학생 학비 지원	동의
96	전라남도		○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변경 지원	동의
97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동의
98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99		○		공공산후조리원(3호점) 설치·운영	동의
100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개설·운영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01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 과정 운영	반려
102	전라북도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바우처) 지원사업	동의
103		○		웰다잉(Well-dying) 사업 추진	반려
104		○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반려
105		○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	반려
106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동의
107	전라북도 교육청		○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 교과서 지원사업	동의
108			○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비 지원	동의
10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2017년 다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	동의
110	제주특별자치도	○		장수노인 생신 축하 지원	반려
111			○	참전명예수당인상(변경)	동의
112		○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당 지원	동의
113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심리정서치료비 지원	동의
114		○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동의
115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학습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116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도민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동의
117		○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원	동의
118		○		한방 난임치료 지원	동의
119		○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120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50%) 지원	동의
121			○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동의
122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동의
123		○		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동의
124		○		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	동의
125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자체재원) 확대 운영	동의
126		○		출산여성 한약 지원	반려
127		○		여성복지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동의
128		○		여성복지시설 입소아동 지원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29			○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확대	동의
130		○		저소득층특별생계비지원	동의
131		○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동의
132			○	4·16세월호 참사피해자 직업재활 참여수당 지원	동의
133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확대	동의
134			○	아동급식지원	동의
135		○		정신질환자 자립촉진을 위한 지원	동의
136			○	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	동의
137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명절특별위로금 지원	반려
138		○		금연 이침을 이용한 금연 지원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139		○		청년 자기개발지원금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140		○		여성어업인 바우처제 신설	변경보완 후 동의
141		○		효행장려금지원	동의
142	충청남도	○		취업성공패키지 참자가 취업촉진 장려사업	동의
143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동의
144	충청북도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동의
145	광주광역시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인력 혹서기·혹한기 수당	반려
146		○		구직청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	동의
147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동의
148			○	구직청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변경)	동의
149		○		성매매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동의
150			○	출산축하금 변경	동의
151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동의
152			○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사업	반려
153			○	가정위탁아동등 자립정착금 지원	동의
154		○		아동급식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사업	동의
155		○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세상배움카드'지원	동의
156	대구광역시	○		한방난임부부 지원	동의
157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58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동의
159		○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시)	반려
160		○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구, 군)	반려
161		○		보훈예우수당	동의
162			○	참전명예수당	동의
163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동의
164	대전광역시	○		행복나눔「청년 취업 희망카드(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165		○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동의
166		○		정부미지원(민간·가정) 시설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동의
167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기 중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	동의
168	부산광역시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월동대책비)	동의
169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동의
170		○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	동의
171			○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동의
172			○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동의
173		○		청년구직활동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174		○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동의
175			○	첫째이후 자녀 출산용품지원	동의
176			○	'17년 저소득층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동의
177			○	'17년 고교 교과서비 지원	동의
178		○		청년건강검진 서비스	동의
179		○		독거노인 무료장례서비스 지원	동의
180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동의
181		○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의료비 지원	동의
182		○		청년 희망날개 통장 지원사업	동의
183		○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비 지원	동의
184			○	'17년 초·중·고 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	동의
185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동의
186		○		셋째이후 자녀 건강보험지원	부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87		○		새싹 초등 입학축하금 지원	동의
188			○	둘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증액 지급	동의
189		○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동의
19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191			○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동의
192			○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동의
193		○		취약계층 암검진 바우처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194			○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동의
195	서울시 교육청		○	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반려
196			○	기타수익자부담경비(수련활동비 등) 지원	동의
197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동의
198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동의
199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동의
200		○		교통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반려
201		○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동의
202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동의
203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동의
204			○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동의
205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동의
206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형 쉐어하우스 시범사업	동의
207		○		세종형 교육급여 지원	동의
208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동의
209		○		입양축하금 지원	동의
210	울산광역시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동의
211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동의
212		○		저소득층 대학생 희망장학금 지원	반려
213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월 6만원→10만원)	동의
214		○		입양축하금 지원	동의
215		○		무료의료봉사 지원 사업	반려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216		○		소외계층 의약품 지원 사업	반려
217		○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동의
218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월 10만원→15만원)	동의
219		○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	반려
220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동의
221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동의
222		○		인천형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변경보완 후 동의
223		○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서비스	동의
224		○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지원사업	동의
225			○	SOS 복지안전벨트(인천형 긴급복지)	동의
226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동의
227			○	엄마라서 행복한 인천, I-Mom 출산 지원	동의
228		○		호국보훈가족 심리지원	동의
229		○		다자녀 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동의
230			○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동의
231		○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동의
232	인천광역시		○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동의
233		○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수당 지원	반려
234			○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동의
235		○		"0세부터 100세까지" 촘촘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동의
236		○		"0세부터 100세까지" 촘촘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동의
237		○		일하는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동의
238		○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동의
239			○	보훈수당 인상 및 신설	동의
240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강화	동의
241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동의
242			○	I-Mom 출산 축하 지원(확대)	동의
243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동의
244		○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245	강원	강릉시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동의
246		고성군	○		이동목욕사업 지원	동의
247				○	보훈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동의
248		삼척시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동의
249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250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사업	반려
251		속초시	○		보훈명예수당 지급	동의
252				○	출산 장려 지원 사업	동의
253				○	출산 장려 지원 사업	동의
254				○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동의
255		양구군		○	참전명예수당	동의
256				○	의치보철 지원 사업 (노인틀니 본인부담 / 무료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비)	동의
257			○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반려
258		양양군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동의
259			○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	동의
260				○	출산장려금 지급	동의
261				○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 수당	동의
262				○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반려
263		원주시		○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동의
264			○		노인의치보철 사업	동의
265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동의
266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동의
267				○	출산장려금 지원	동의
268				○	보훈명예수당 지급	동의
269			○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반려
270		인제군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동의
271			○		독거노인 환경정비사업	동의
272				○	보훈영예수당	동의
273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274			○		저소득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동의
275			○		저소득층 주택 맞춤형 수선 사업	동의
27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생산장려금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277		정선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대사업	동의
278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동의
279			○		인구늘리기 지원	동의
280		철원군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동의
281			○		폐암고위험군 금연시도자를 위한 폐암 조기검진	변경보완 후 동의
282			○		2017년 여성지도자 힐링 워크숍	반려
28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동의
284		춘천시	○		아이사랑 통장갖기	반려
285			○		임산부 택시 쿠폰 지원	동의
286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자체)	변경보완 후 동의
287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동의
288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동의
289		태백시	○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	동의
290			○		시민안전보험 운영	반려
291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대상자 건강검진 지원	반려
292		평창군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동의
293				○	출산축하금 지원	동의
294			○		저소득층 노인 의치 시술지원 사업	동의
295			○		우울증 약제비 지원사업	동의
296				○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동의
297		홍천군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동의
298			○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자립정착금)	동의
299			○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 지원 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300			○		저소득 취약계층 학습지원 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301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동의
302		화천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303			○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동의
304			○		저소득가정 난방유 지원	동의
305				○	아이돌봄 지원사업	동의
306			○		장애아동 교통비 지원	동의
307			○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동의
308			○		학생 통학비 지원	동의
30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동의
310			○		학생 통학버스 지원	동의
311				○	참전명예수당	동의
312				○	보훈영예수당	동의
313			○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동의
314		횡성군		○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	동의
315			○		보훈명예수당 지급	동의
316			○		보호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동의
317				○	참전명예수당	동의
318				○	보훈영예수당	동의
319	경기	가평군		○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동의
320		고양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동의
321			○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	동의
322			○		홀몸어르신 평생돌보미 사업 실버케어센터	동의
323			○		평가인증어린이집 냉 · 난방비 지원	반려
324		과천시	○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동의
325				○	출산장려금 인상 지원	동의
326			○		'참전유공자'등에 대한 위문금 지급	동의
327				○	보훈명예수당 지급요건	동의
328		광명시	○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	반려
329			○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동의
330			○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동의
331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동의
332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추가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333				○	보훈회원 추석 위문금 추가	동의
334		광주시	○		〖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동의
33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동의
336			○		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변경보완 후 동의
337			○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운영(가칭)	동의
338		구리시		○	화장장려금 지원	동의
339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액 인상	동의
340		군포시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보훈 명예수당 지원	동의
341		김포시		○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용 확대 및 변경	동의
342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확대	동의
343			○		고려인 주민 한국어교육 및 문화체험	동의
344			○		참전명예수당 지급	동의
345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동의
346		동두천시		○	보훈명예수당	동의
347				○	복지대상자녀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	변경보완 후 동의
348			○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동의
349				○	출산장려금 지원	동의
350		부천시		○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동의
351			○		희희빨래방 운영	반려
352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동의
353			○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반려
354			○		장애인 문화예술제 개최	반려
355		성남시		○	보훈명예수당 확대	동의
356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착금 지원계획	동의
357			○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제도	반려
358			○		노인일자리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비 보조	동의
359		수원시	○		국민기초수급(생계)가정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동의
360			○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반려
361			○		취업준비생(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362				○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원기준 변경	동의
363			○		저소득층 아동 발달(심리) 상담	변경보완 후 동의
364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365				○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동의
366			○		취업준비청년 정장대여 사업	동의
367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동의
368				○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동의
369		시흥시	○		시흥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동의
370				○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동의
371			○		우리동네 아동공공의료 제도 도입	동의
372			○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 제도 도입	변경보완 후 동의
373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동의
374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동의
375			○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동의
376				○	임신 · 출산 건강지원 확대	동의
377			○		임신전 건강관리(풍진예방접종사업)	동의
378		안산시	○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지원	부동의
379				○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380			○		한부모 가정 일·가정 양립 가사서비스 지원	동의
381				○	다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동의
382			○		출산축하용품 지원	동의
383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사업 변경	변경보완 후 동의
384			○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비 지원	반려
385		안성시	○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사업	동의
386				○	출산 장려금 지원	동의
387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명예수당 지급	동의
388		안양시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389				○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확대	동의
390		양산시	○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동의
391		양주시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동의
392		양평군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동의
393		여주시	○		경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추가 사업 실시	변경보완 후 동의
394			○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 지원	동의
395			○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동의
396				○	출산장려금 지원	동의
397			○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398				○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동의
399				○	보훈명예수당	동의
400			○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동의
401			○		고령노인의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비 지원	반려
402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지원	반려
403				○	출산장려금 지원	동의
404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동의
405		연천군		○	보훈대상 복지지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추가)	동의
406			○		출산 축하금 지원 확대 사업	동의
407			○		저소득 주민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동의
408		오산시		○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동의
409			○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등 지원사업	동의
410			○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411			○		노인 무료 틀니 사업	동의
412				○	다자녀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동의
413		용인시		○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동의
414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명예수당 증액)	동의
415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동의
416			○		청소년 선도·보호단체 지원	반려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417				○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 추가 지원)	동의
418			○		법정저소득 영유아 입학준비금 지원	동의
419			○		셋째아이상 누리차액보육료 지원	동의
420			○		더불어 가는 발맞춤 장애아통합보육 지원확대	동의
421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확대	동의
422			○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아동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동의
423				○	등하교 스쿨존 지킴이 노인일자리 사업	동의
424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의 달 위문금 대상자 확대)	동의
425			○		경로복지 도우미 노인일자리 사업	동의
426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동의
427			○		노인일자리 "전문서비스형(학교지원사업)" 사업비 보조	동의
428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동의
429			○		엄마상자(출산용품) 지원사업	동의
43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동의
431			○		행복한 다문화가족 사진 지원 사업	반려
432			○		품격 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반려
433			○		저소득 가정 돌잔치 지원사업	동의
434		의왕시		○	출산장려 보조금지원	동의
435				○	취약계층 타이머 콕 보급 사업	동의
436				○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반려
437		의정부시		○	출산장려 등 지원 확대(출산지원품 지급)	동의
438				○	출산장려 등 지원 확대(출산장려금 대상 확대)	동의
439		이천시	○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동의
440		파주시	○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동의
441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	반려
442		평택시		○	참전유공자 수당 변경	동의
443			○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동의
444			○		특수임무 유공자 공로수당	동의
445			○		북한이탈주민 취업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44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비 지원	동의
447				○	명예수당 변경	동의
44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	동의
449				○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변경	동의
450			○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동의
451		하남시		○	출산장려금 지원	동의
452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동의
453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동의
454		화성시	○		다자녀가정출산장려사업 - 교복비 지원	동의
455			○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사업 - 미아방지목걸이 지원	동의
456			○		다문화 통합프로그램 운영	반려
457				○	출산 지원금	동의
458	경남	거제시	○		참전유공자 미망인	동의
459				○	참전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동의
460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동의
461		구미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동의
462		김해시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463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금액 변경	동의
464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	동의
465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금액 변경	동의
466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동의
467		남해군	○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동의
468		밀양시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동의
469			○		노인 건강진단	반려
470			○		경로잔치 지원	동의
471		사천시	○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472			○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동의
473		산청군		○	참전유공자 지원	동의
474			○		치매노인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475				○	참전유공자지원	동의
476		양산시	○		태아기형아(쿼드) 검사 지원	동의
47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동의
478		의령군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동의
479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동의
48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481		진주시		○	명예수당 증액	동의
482		창녕군	○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동의
483		창원시		○	참전명예수당(월남참전자 및 전몰군경유족)	동의
484			○		보훈명예수당 지급	동의
485			○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동의
486			○		구직청년 무료건강검진	동의
487			○		배회감지기사업	반려
488		통영시		○	참전유공자 사망조의금 인상	동의
489			○		전상 및 공상군경 수당	동의
490			○		순직군경 수당	동의
491		하동군	○		태아기형아 등 검사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492			○		보훈 예우수당	동의
493		함양군	○		치매노인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494			○		산후 조리비용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495			○		둘째아 출산산모한방 첩약 지원	부동의
496			○		보훈명예수당 지급	동의
497			○		신장 장애 2급 등록자 교통비 지원 사업	동의
49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동의
499			○		만3~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동의
500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동의
501				○	월남참전 명예수당 지원	동의
502				○	참전유족 명예수당 지원	동의
503		합천군	○		공상군경 명예수당 지원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504				○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액 변경	동의
505			○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동의
506			○		산후조리비용 지원	부동의
50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동의
508	경북	경산시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반려
509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확대 지원	동의
510			○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	동의
511				○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지원	동의
512				○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원	동의
513		고령군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동의
514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동의
515				○	보훈예우수당	동의
516			○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동의
517		구미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확대	동의
518			○		임신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519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반려
520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	동의
521				○	임신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확대	동의
522		군위군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동의
523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인상)	동의
524				○	보훈(유족)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인상)	동의
525		김천시	○		노인의치(틀니) 의료비 지원 사업	동의
526				○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동의
527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동의
528		김천시 보건소	○		다자녀(셋째이상) 대학 교육비 지원	동의
529		문경시		○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동의
530				○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	동의
531		봉화군		○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동의
532				○	보훈예우수당 인상 지급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533		안동시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동의
534				○	보훈예우수당	동의
535			○		영구임대아파트 활성화 사업	반려
536				○	「미망인 복지수당」지원사업	동의
537				○	「참전명예수당」지원사업	동의
538		영덕군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동의
539		영양군	○		화장 장려보조금 지원사업	동의
540				○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동의
541				○	보훈예우수당 인상 지급	동의
542		영주시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동의
543			○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동의
544		영천시		○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액 인상	동의
545				○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동의
546		예천군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동의
547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인상)	동의
548				○	보훈(유족)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인상)	동의
549		울릉군	○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동의
550				○	참전명예수당 인상	동의
551		울진군		○	장애아동 이동지원 서비스	변경보완 후 동의
552				○	출산장려금 지원	동의
553			○		재난취약계층 지원	동의
554				○	출생아 건강지원 사업	동의
555				○	출산장려금 지원	동의
556				○	저소득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동의
557		의성군		○	참전명예수당 지원	동의
558				○	보훈예우수당 지원	동의
559		청도군		○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동의
560				○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동의
561		청송군	○		취약계층 보금자리 단장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562			○		화장장려 보조금 지원사업	동의
563			○		배회노인 지킴이(실종예방)사업	동의
564		포항시	○		산후조리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565			○		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사업	동의
566	광주	광산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용(본인부담금) 지원	동의
567			○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568			○		감동백배! 마더박스(motherbox) 지원사업	동의
569		남구	○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	동의
570		동구	○		청소년 이(齒) 행복한 세상	동의
571		북구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동의
572	대구	남구보건소	○		출산축하용품 증정	동의
573		북구	○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 사업	동의
574			○		경로우대 목욕장 하수도료 지원	동의
575		중구		○	출산축하금 지원	동의
576	대전	서구		○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동의
577			○		취약계층 타이머콕 지원사업	동의
578		유성구	○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사업	동의
579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확대	동의
580		중구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확대	동의
581	부산	강서구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등록경로당 안전망 지원	동의
582		기장군	○		호스피스 완화케어사업	동의
583			○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	반려
584			○		중학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부동의
585			○		산후조리비용지원	반려
586				○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부동의
587			○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반려
588			○		경로당 탁상형 자동전자혈압계 지원 사업	반려
589		남구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동의
590		사하구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591	서울	서구		○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융자 지원	동의
592				○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동의
593		수영구		○	출산장려금 지원	동의
594		중구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부동의
595		해운대구	○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사업 (6.25 및 월남참전명예수당 지원)	동의
596		강동구	○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동의
597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동의
598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동의
599			○		보훈예우수당 지급	동의
600		강북구	○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배달 사업	동의
601			○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602			○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사업	동의
603			○		발달장애인 생활체육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604		강서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동의
605			○		청소년지원카드(가칭) 사업	동의
606		관악구	○		가스지키미 설치	동의
607		광진구	○		입양축하금	동의
608		금천구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동의
609			○		아동 꿈키움 카드 지원	동의
610			○		입양 축하금 지원	동의
611		노원구		○	출산축하금	동의
612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동의
613		도봉구	○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동의
614				○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동의
615		동대문구	○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 사업	동의
616		동작구	○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동의
617			○		입양가정 지원사업	동의
618			○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619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동의
620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동의
621		서대문구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급	동의
622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동의
623		서초구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확대 (서초형 산모돌보미)	동의
624		성동구	○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가칭) 지원	동의
625		성북구	○		친환경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쌀 구매차액 지원	동의
626				○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동의
627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동의
628		송파구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사업	동의
629		양천구	○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	반려
630			○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	동의
631		영등포구		○	출산장려금 지원	동의
632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및 금액 변경	동의
633		용산구		○	노인건강음료 제공사업	동의
63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동의
635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동의
636				○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동의
637		은평구		○	다둥이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동의
638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639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동의
640			○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동의
641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동의
642		종로구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동의
643		중구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동의
644				○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동의
645	울산	남구		○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동의
646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647			○		출산 축하용품 지원	동의
648		동구	○		6.25 및 월남전참전전상군경 “유족명예수당” 과 순직군경 “유족명예수당” 확대지원	동의
649		북구	○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동의
650			○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동의
651				○	전몰·순직군경유족명예수당확대지원	동의
652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동의
653		울주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인상지급	동의
654			○		취약계층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동의
655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동의
656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인상지급	동의
657			○		출산축하용품 지원	동의
658		중구	○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청소, 경비비)일부 지원	동의
659				○	보훈명예수당(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 확대 지원	동의
660				○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동의
661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 확대	동의
662	인천	강화군		○	효행수당-3대 동거 장려 확대 지원	동의
663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인상	동의
664			○		시간제 청년 근로자 취업 동기부여를 위한 장려금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66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동의
666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동의
667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인상	동의
668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동의
669			○		치아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670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동의
671			○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반려
672		계양구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사업	동의
673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사업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674				○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	동의
675		남동구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지원	동의
676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	동의
677			○		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동의
678			○		출산장려금 지원	동의
679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동의
680			○		민간 · 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동의
681		동구		○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동의
682		부평구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동의
683				○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대상 확대	반려
684			○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반려
685			○		출산 축하용품 (출생축하 카드 포함) 지원	동의
686		서구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동의
687		연수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운영	동의
688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동의
689			○		임산부 초기검진사업	반려
690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부모 부담보육료 지원	동의
691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부모 부담보육료 전액 지원	동의
692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인상	동의
693			○		건강한 일터·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동의
694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교육비 지원사업	동의
695				○	셋째아 이후 출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동의
696		옹진군		○	보건소 의치(틀니) 사업	동의
697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동의
698				○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변경	동의
699			○		다자녀 가정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동의
700				○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동의
701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인상	동의
702		중구	○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계획	변경보완 후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703			○		아토피·천식 진단검사 치료비 지원	동의
704	전남	고흥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동의
705				○	출산장려금 및 임산부 초음파 검사 지원 확대	변경보완 후 동의
706			○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군비지원 사업	동의
707		곡성군		○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세트 지원 변경	동의
708			○		산후조리비용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709			○		출산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710			○		임산부 진찰교통비 지원	동의
711			○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동의
712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변경	동의
713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동의
714		광양시		○	신생아 양육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715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동의
716			○		청년층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동의
717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동의
718			○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	동의
719			○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동의
720				○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동의
721		구례군		○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동의
722			○		B형간염 항체검사 및 무료 예방접종	변경보완 후 동의
723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동의
724			○		산모·아기사랑 축하 선물 지원	동의
725			○		「산모 든든 택시」 운영	동의
726			○		C형간염 조기발견	동의
727				○	화장장사용료 지원	동의
728		나주시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지원 확대	동의
729			○		소외계층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동의
730			○		사랑의 이삿짐 센터 운영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731			○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	동의
732				○	4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동의
733		담양군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무상임차가구 수선비)	동의
734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이동식주택 무상양여)	동의
735				○	아가사랑 엄마 맘 지원(영유아 안전장비 지원)	동의
736				○	임신부 산전검진 지원사업	동의
737			○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동의
738			○		보훈수당	동의
73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동의
740			○		대장암 검사 지원사업	동의
741		목포시		○	출산축하금 상향 지원	동의
742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설	동의
743				○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동의
744			○		장애인등록 1~2급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동의
745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지원	동의
746		무안군	○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동의
747			○		경로당 실내운동기구 렌탈료 지원	반려
748		보성군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변경	동의
749		순천시	○		그때 그 요금,「100원 버스 사업」추진	반려
750			○		청년 꿈찾기 필독 선정 도서 지원 사업	반려
751				○	출산 축하용품「순천로컬푸드 상품권」지원	동의
752		신안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동의
753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인상	동의
754			○		화장장려금 지급	동의
755		여수시		○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전·공상군경 제외)	동의
756		영광군		○	아이돌봄 지원사업	동의
757			○		출산 축하물품 지원	동의
758			○		이동세탁서비스 운영 지원	동의
759				○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동의
760			○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 지원	동의
761			○		중증 청년 장애인 「Deam car」지원사업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762			○		장난감 도서관 운영 지원	반려
763				○	청년희망 플러스 통장 지원사업	동의
764			○		청년 취업활동 수당	변경보완 후 동의
765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동의
766				○	청년희망 플러스 통장 지원사업	동의
767		영암군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동의
768		완도군	○		임산부 출산준비금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769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770			○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부동의
771			○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772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확대 지원	동의
773		장성군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동의
774				○	산모아기사랑 택배지원사업 운영	동의
775				○	노인 효도권 지원사업	동의
776		장흥군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동의
777			○		탄생축하용품 지원	동의
778		진도군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신규인력 양성	동의
779		함평군	○		호국보훈수당 지급	동의
780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동의
781			○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반려
782			○		장례용품 및 화장장려금 지원	동의
783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사업	반려
784			○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동의
785			○		저소득계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	동의
786		해남군	○		독거노인 장수사진 촬영지원 사업	동의
787			○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동의
788				○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	반려
789			○		기초수급자 주택화재보험료 지원	반려
790			○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791	전북		○		기초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반려
792			○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 지원(장려금 및 장기재직 수당)	반려
793			○		어린이집 특별간식비 지원	반려
794		화순군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1)	동의
795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2)	동의
796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동의
79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동의
798		군산시	○		휠체어 · 컴퓨터클린업 사업	동의
799			○		희망스터디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800			○		예비 맘 산전검사 지원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	동의
801			○		찾아가는 무료빨래방 사업	동의
802		김제시	○		출산 축하용품 마더박스(motherbox) 지원	동의
803		남원시		○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상향 및 분할지원	동의
804			○		결혼이민자 국제운송비 지원	부동의
805				○	출산장려금 상향 및 분할지원	동의
806				○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대상자 확대	동의
807		무주군	○		합동전통회혼례 사업	반려
808			○		아름다운 노년의 프로포즈 사업	반려
809		부안군		○	호국보훈수당	동의
810			○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동의
811		순창군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사업	동의
812			○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가족 자녀학습활동비 지원	반려
813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사업	동의
814		완주군	○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	반려
815		익산시	○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지원 조례	동의
816			○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지원	반려
817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동의
818			○		둘째아이 상출산모 한방첩약 지원	부동의
819			○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반려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820		임실군	○		통합사례관리(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업	동의
821			○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822			○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원사업	부동의
823				○	노인목욕권 지원 사업	동의
824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동의
825			○		복지사각지대(1인가구) 고독 사 예방 사업	동의
826		장수군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동의
827		전주시	○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동의
828				○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확대	반려
829				○	출생 장려 사업	동의
830			○		청년쉼표! 프로젝트	동의
831				○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원 사업	동의
832		정읍시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동의
833				○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동의
834				○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동의
835				○	호국보훈수당 지원 (금액 인상)	동의
836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동의
837		진안군	○		취약계층 목욕비지원	동의
83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839			○		아토피안심학교 주거지원	반려
840			○		산모.출산 산후조리 격려금 지원	부동의
841	제주	서귀포시	○		어려운 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	반려
842			○		독거노인 자매결연사업	반려
843	충남	계룡시		○	출산 장려금 지원	동의
844			○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동의
845			○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동의
846			○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동의
847			○		화장장려금 지원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848		공주시		○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및 확대 지원	동의
849				○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및 확대 지원	동의
850		금산군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851				○	출산 장려금 변경 지원	동의
852				○	따뜻한 마음나눔 집수리지원	동의
853				○	참전명예수당 지원	동의
854				○	보훈명예수당 지원	동의
855		논산시		○	엽산제 및 철분제 등 지원	동의
856			○		임부 초음파 검진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857			○		치매조기검진 지원	동의
858		당진시		○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지원	동의
859				○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확대 지원	동의
860			○		저소득층 주거수리 지원	동의
861			○		「청년 생활임금」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862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우리가돌봄사업”	동의
863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동의
864				○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사업	반려
865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반려
866				○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 사업	반려
867		보령시	○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	반려
868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변경 및 수당 인상	동의
869				○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동의
870		부여군	○		임산부 분만이송(교통비)비 지원	동의
871			○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	동의
872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873			○		보훈명예수당 지원	동의
874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안전관리수당 지원	반려
875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요금 지원사업	부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876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동의
877				○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동의
878				○	참전유공자수당 인상 지원	동의
879		서산시		○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변경보완 후 동의
880			○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지원 사업	동의
881		아산시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사업	동의
882			○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	동의
883			○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동의
884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동의
885			○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	동의
886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변경	동의
887				○	독립유공자 지원	동의
888			○		청년내일 카드	변경보완 후 동의
889		예산군		○	다자녀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반려
890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부동의
891		천안시	○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동의
892			○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	동의
893				○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보조	반려
894		청양군		○	인구정책사업	동의
89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동의
896		태안군		○	참전명예 수당 지급	동의
897				○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동의
898			○		다자녀(셋째아 이상) 학생 장학금 지원	동의
899			○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 지원	부동의
900			○		임산부 태아보험 지원	부동의
901			○		아동 병원 진료비 지원	부동의
902			○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동의
903			○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 수당 지원	동의
904			○		저소득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905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부동의
90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동의
907			○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품 지원	동의
908		홍성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909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모두 지원 사업	동의
91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동의
911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인상	동의
912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동의
913			○		보훈명예 배우자 수당	동의
914	충북	괴산군		○	보훈대상자(참전·독립유공자) 지원	동의
915			○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동의
91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변경보완 후 동의
917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동의
918			○		가임여성 건강검진비 지원	동의
919			○		중·고등학교 여학생 전원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반려
920			○		65세 이상 노인 파상풍 무료 예방접종	동의
921			○		7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동의
922		단양군	○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외래진료비 감면	동의
923		보은군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	동의
924		영동군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동의
925		옥천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동의
926			○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동의
927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반려
928			○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자부담금 지원	동의
929			○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부동의
930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동의
931		제천시	○		순직군경 유족수당 지원	동의
932				○	참전명예수당 인상(80세 미만 8만원->10만원)	동의
933				○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사업	동의

연번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934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동의
935		증평군		○	독립·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동의
936			○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동의
937		진천군		○	독립·참전명예수당 지원	동의
938		청주시	○		시간제보육 보육료(야간휴일포함) 지원	동의
939				○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동의
940				○	계절 인플루엔자 확대 사업	동의
941			○		이전·확장기업 소속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반려
942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동의
943				○	보훈예우수당	동의
944			○		신장장애인 혈액·복막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동의
945		충주시	○		재활용품수집노인 및 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	동의
946				○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원	동의
947			○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사업	반려
948			○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사업	동의
949				○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대상 확대	반려
950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반려
951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인상 지원	동의
952				○	보훈예우 수당 인상 지원	동의
953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복지수당 인상 지원	동의

【부 록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8.1.1. 기준)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1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안전지킴이
2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3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임금피크제지원금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
5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취약계층취업지원 사업
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0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1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1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업훈련
13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14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15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요양급여(보조기) 산재보험급여
16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진폐근로자보호
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1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20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2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2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2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2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25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2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표준사업장설립지원
2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지원금
2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활안정자금대부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체불생계비대부
30	교육부	대학장학과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31	교육부	대학장학과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32	교육부	대학장학과	인문100년 장학금
33	교육부	대학장학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34	교육부	대학장학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35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6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37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38	교육부	이러닝과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39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40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41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42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WEE 클래스 상담지원
43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급식비
44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45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고교 학비 지원
46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47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8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지원
49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50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51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
52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53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영주귀국정착금
54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독립유공자등)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55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손자녀가계지원비
56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애국지사특별예우금
57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58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고엽제환자2세 수당
5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61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62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무공영예수당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63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금
64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사망일시금
65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참전명예수당
66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67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68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6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보훈병원진료
70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위탁병원진료
71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72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양로지원
73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74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민영교통시설이용(버스,내항여객선,KTX등)
75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76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재해위로금지급
77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78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7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
80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81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82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8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고엽제특별지원
84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85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재해보상금
86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8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88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 대부지원
8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전직지원금
90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9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9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9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국민임대주택공급
9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기존주택전세임대
95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9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다가구등 기존주택매입임대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97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영구임대주택공급
98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장기전세주택공급
99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100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준주택지원(융자)
10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0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0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104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주거환경개선자금
105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행복주택 공급
106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10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버팀목대출보증
10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0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10	금융위원회	은행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1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국세감면(34종)
11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근로장려금
11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11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11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1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117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인안전보험
118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11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학교우유급식
120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12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12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창작준비금 지원
12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12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고령층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온라인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장애인 정보화교육
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사랑의그린PC보급
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웹정보접근성제고
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13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13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134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40세, 만66세)
136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137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138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39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
14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4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14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노후준비서비스
14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교육지원
14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4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14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14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의료지원
14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4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거지원
15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15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15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장제급여
15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해산급여
15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155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156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157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58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5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16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6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6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63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64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6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66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방과후보육료지원
16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다문화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애아보육료지원
16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제보육
169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170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17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17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7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7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7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의사상자 지원
176	보건복지부	심혈관.희귀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177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다함께 돌봄사업
178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79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18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8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8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18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18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만기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8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가정위탁양육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등)
18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187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지급
188	보건복지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89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9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할린한인지원
19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19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시설급여
19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가급여
19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195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196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노숙인등 복지지원
197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양곡할인
198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199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200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20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20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20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지원사업 통합 운영
204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재활서비스
20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언어발달지원사업
20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교육지원
207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0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0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
210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일반형 일자리 지원
21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수당
21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
21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214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보조기구교부
215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21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217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의료비지원
218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
21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22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2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건강검진사업
22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22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지원 사업
22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225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2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검진사업
22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환자의료비지원
228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폭피해자지원
22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재가암관리
23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지원
23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3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난임부부시술비지원
23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234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3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3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237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산림서비스도우미
238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39	산림청	산림자원과	공공산림가꾸기
240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지원단
24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24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24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서민층가스시설개선
24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에너지바우처
24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보일러교체지원)
246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247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미혼모·부 초기지원
248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249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250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25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지원
25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5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54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255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56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257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58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59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26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262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263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264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
265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266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건강지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267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268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유해환경개선
269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70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27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지원
272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273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274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75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	여성기업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	여성창업지원
27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융자)
27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창업지원
27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제공
279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280	통일부	이산가족과	납북피해자 지원
281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282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
283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
284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285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료지원
286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287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288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289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290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29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292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가사도우미
293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94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감면(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295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96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석면피해구제급여
297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298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건강보호종합대책 지원사업

【부 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연번	시도명	부서명
1	강원도	복지정책과
2	경기도	복지정책과
3	경상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
4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6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
7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9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10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11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
12	인천광역시	공감복지과
13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14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1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16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17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시도별 배열 순서는 가나다 順

【부 록4】

그 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0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부정적 효과 초래

0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요청내용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결과 **과잉이용 유도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우려**로 부동의

0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요청내용 영·유아, 노인, 여성농업인 등에 대해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결과 **과잉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로 부동의

03 민간보험료 지원

요청내용 1세 이하 셋째아 대상 1인당 월 3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

협의결과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켜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동의

02 사회보장급여 또는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유발

01 장수수당

요청내용 고령 노인에게 정기적인 현금 지급

협의결과 **소득에 상관없는 정기적 현금지급은 국가사업인 기초연금과 유사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서** 부동의

02 노인 교통비 지원

요청내용 여가·관광, 운송수단 이용비용 보전을 위한 정액 지원

협의결과 **국가사업인 기초연금과 유사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서** 부동의

03 저소득층 교육경비 지원

요청내용 취약계층 학생에서 급식비,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협의결과 **동일 지역 내 교육청에서 기 시행 중인 경우 지자체 중복 지원** 부동의

03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과 배치되는 등 사업의 타당성 결여

01 사설 학원비 지원

요청내용 취약계층가정의 학생에게 사설 학원비 및 교재비 지원

협의결과 **입시목적의 주요 교과목 선행학습 등이 이루어지는 사설 학원**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정부정책방향(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근절)을** 고려하여 **공교육 체계 내 타 교육지원사업으로 전환 권고**

02 민간산후조리비용 지원

요청내용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

협의결과 **감염·안전 위험 등의 우려가**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공공재원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등의 **기존정책 활용** 권고

03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요청내용 출산 산모에게 한방첩약 지원

협의결과 **산후조리 목적 한약지원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는 등 공공재원투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등 **기존정책 활용** 권고

04 그 외 관련법령 등의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부 록5】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협의요청서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내용이 협의요청양식에 따라 알맞게 작성된 지자체 사업 중 일부내용을 수정·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 이해 목적 외 사용금지**(예, 동일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 요청 등)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____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청년)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1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100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5,000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2017년 ○월(예정) / 2017년 ○월 ※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제도 신설 필요성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면서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액의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 필요
관련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 청년지원 조례 제2조
사업목적		일정소득 이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경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 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③ 공고일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학생 등 일부참여제한 – 구직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서류 미비자는 선정 제외
	대상규모	5,000명
지원 내용	지원유형	카드 발행을 통한 사후 지원
	지원수준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사후 지급 (최대 300만원)
전달 체계	지원절차	공고→신청→심사→대상자선정→카드발급→현금지원*→사례관리 * 매월 활동계획 및 결과에 기초하여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
	수행기관	○○○○재단
소요 재원	총규모	165억 원 (지원금 150억, 시스템개발비 5억, 운영비 10억)
	재원별 규모	도비 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격정보, 유사 급여(취업성공패키지 등) 수혜 이력(지급실적) 등
	연계 방안	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을 활용한 공적정보 조회

2.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 청년층 고용상황의 계속적인 악화 예상

- '16년 현재 전체 실업률은 3.7%인 반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에 달함. 청년층 고용률도 '04년 45.2%, '15년 42.3%로 지속적으로 하락
  - 치열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교에 남아 취업을 준비하면서 청년층의 비노동력화·유휴화·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
- '9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에코)*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시기임에 따라 청년들 고용상황은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전망

※ '90년대 초반에 신생아(에코세대)가 매년 70만 명 이상씩 태어남

구분	전국 실업률 (%, %p)				○○○ 실업률 (%, %p)			
시점	전연령	청년 (15-29세)	중장년 (30-59세)	노년 (60세이상)	전연령	청년 (15-29세)	중장년 (30-59세)	노년 (60세이상)
2000(A)	4.4	8.1	3.5	1.5	3.9	6.2	3.2	2.6
2016(B)	3.7	9.8	2.5	2.7	3.9	9.7	2.6	3.3
증감(B-A)	△0.7	1.7	△1.0	1.2	0.0	3.5	△0.6	0.7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구직활동 제한, 취업준비기간 장기화

- **최근까지 청년층은**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음**
  -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생계비 마련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 취업준비를 하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취업실패반복·노동시장진입지연** 등 악순환 반복

□ 청년취업 문제는 저소득 청년만이 아닌 청년 全 계층의 문제

- 청년취업은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견 제기

- 부모의 지원이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저소득 뿐만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모든 청년층에게 혜택***을 제공할 필요 있음

구분	정책 우선순위	구분	정책 우선순위	구분	정책 우선순위
저소득 미취업자	1위(50.1%)	졸 업 유 예 자	4위(25.6%)	예 비 창 업 자	7위(9.2%)
장기 미취업자	2위(31.8%)	여성 미취업자	5위(16.8%)	구 직 단 념 자	8위(7.6%)
모 든 청 년	3위(28.6%)	무연고 청년	6위(11.6%)	니 트 족	9위(6.2%)

● 청년들은 현재 **안정적 일자리 마련에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으며 취업지원· 일자리 **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모든 청년"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도내 **청년들의 40% 내외**는 생계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청년 22%는 부채**(평균2,657만원) 보유

※ 부채원인 : 교육비·주거비·생활비 順

알바	주거·생활비	등록금 등	여행·취미	사회경험	저축·목돈	취·창업 스펙	어학연수
비율	45.4%	16%	15.3%	9%	7.8%	5.3%	1.2%

② 지역의 특수성

□ **전국 최대(1/4) 청년인구 거주, 道內 청년층 체감 고용불안정은 전국 최고**

● '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청년(18-34세) 인구(1,158.7만명) 대비 ○○ **청년 인구**(291.3만명)는 **전국의 25.3%를 차지하며 최대 규모**

행정 구역	청년 인구 (명)	청년인구비중(%)		행정 구역	청년 인구 (명)	청년인구비중(%)	
		지역 인구 중	전국 청년 중			지역 인구 중	전국 청년 중
전국	13,365,227	25.8%	100%	○○	865,611	24.8%	6.5%
○○	3,376,584	26.5%	25.3%	○○	815,075	24.2%	6.1%
○○	2,776,839	28.0%	20.8%	○○	790,801	26.9%	5.9%

● 지난 15년('00년-'16년) 간 전국 대비 ○○ **청년층의 고용률 및 실업률의 증감 폭이 2배 이상**으로 크게 변화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체감도**가 심각한 상황

- **전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1%p 하락**, 반면 ○○ **청년층은 2.4%p 하락**
- **전국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7%p 상승**, 반면 ○○ **청년층은 3.6%p 상승**

● '16년 ○○○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년층(15-29세)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55.6%**로 관내 평균(37.0%) 대비 가장 높고 **전국 평균(33.3%) 보다 높음**

- 또한, ○○○는 제조업 등 직종의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높아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각하며 **구직기간도 길어 장기 실업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지역적 특수성으로 도내 청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부담 가중**

● 도내 청년들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장거리 이동**(서울 등 외곽)**으로 교통비 부담**이 크며 그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청년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여가시간의 부족(33.6%), 높은 피로도(32.7%), 과도한 교통비 지출(20.4%)(월 평균 교통비 11만5천원) 등의 상실감 호소

□ **전국 대비 높은 청년 니트족 규모**

● ○○○는 **전체 인구의 30%이상을 20-30대가 차지**할 정도로 **청년비중이 높음**

- 도는 **'청년 니트족' 규모**(27만6천명)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니트족'**(20만1천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고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를 비롯하여 구직활동이 소극적인 니트족에 대해서도 정책대응을 확대해 나갈 필요 있음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이하 "취성패")**

● **(서비스 특화)** 취성패는 **다양한 청년층을 포괄**하고 있으며 참여자 유형을 **취성패Ⅰ**(기초수급자·저소득층), **취성패Ⅱ**(청년·중장년)으로 분류 구분함

- 그러나, 참여자의 취업역량 등급에 따른 **유형별 서비스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비해 청년층의 취업 성과가 낮게** 나타남

● **(직업훈련) 청년층**은 기초수급자에 비해 취업역량이 높아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고** 취업지원경로를 살펴보면 **'1-3단계형'의 취업률(81.6%)****이 높음

- 또한, 직업훈련 실시 이후 **직업훈련과 취업 직종과의 일치여부**를 살펴보면 일치가 17.75%·**불일치가 82.25%**로 대부분이 **훈련과 다른 직종에 취업**

● **(취업알선)** 청년층은 기초수급자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훈련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구직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취성패를 훈련지원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경우 '통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의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곤란

〈타 유사사업과 비교〉

구분	청년활동지원사업 (서울)	청년배당 (경기 성남)	청년사회진출사업 (인천)	행복나눔청년취업희망카드 (대전)
목적	▸ 사회활동 지원	▸ 기본소득 보장	▸ 면접활동 지원	▸ 구직활동 지원
대상	▸ 1년 이상 거주 ▸ 19~34세 미취업 ▸ 중위소득150%이하	▸ 3년 이상 거주 ▸ 만24세 청년	▸ 취성패Ⅰ,Ⅱ유형 참여 중인 청년	▸ 19~34세 미취업 ▸ 중위소득150%이하
지원	▸ **총300만원** (월50만원씩6개월) (카드형태사후지원)	▸ **연간 100만원** (분기별25만원) ▸ 지역상품권	▸ **취성패Ⅰ: 60만원** (월20만원씩3개월) ▸ **취성패Ⅱ: 20만원**	▸ **총180만원** (온라인포인트&체크)
예산	▸ **('17년) 150억**	▸ **('17년) 113억**	▸ **('17년) 30억**	▸ **('17년) 108억**

구분	청년교통비지원사업 (경기 수원)	희망이음프로젝트 (충남)	청년복지카드 (경북)	청년구직지원금 (경기도)
목적	▸ 면접활동 지원	▸ 면접활동 지원	▸ 안정적 생활비 지원	▸ 구직활동 지원
대상	▸ 19~34세 미취업 ▸ 중위소득60%이하	▸ 취성패 3단계 참여중인 청년	▸ 도내15~39세 근로자 (근로자 3-99명 이하 중소기업) (연봉 3천만원 이하)	▸ 1년 이상 거주 ▸ 18~34세 미취업 ▸ 중위소득80%이하
지원	▸ **총18만원** (월3만원씩 6개월) ▸ **1,200명**	▸ **1인당 5만원**(1회) (포인트&체크) ▸ **500명**	▸ **1인당 연간 100만원** (50만원씩 2회 지급) (선불카드지원)	▸ **총300만원** (월50만원씩6개월) (카드형태사후지원)
예산	▸ **('17년) 2억1600만원**	▸ **('17년) 5천만원**	▸ **('17년) 20억**	▸ **('17년) 165억**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정부정책 사각지대 해소) 취성패 미참여자 발굴**

- **(사업취지)** 정부의 **고용보험과 취성패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현금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취성패가 보호하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 청년층** 중에서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OECD 청년행동계획 우선 지원대상('14년)〉 : 청년니트, 신규졸업자, 일자리 미스매치에 직면한 대학 졸업자
- **(기본방향)** 구직활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설계
  - ○○○**의 사업**의 가장 **핵심은 질 좋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의존을 야기하지 않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
- **(지원대상)** 청년층에 대한 포괄지원이 아니라 **①저소득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중 **②취성패 사각지대**에 있는 **③구직의지가 높은 근로능력자**를 선발
  -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별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 〈사업 참여 제외〉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단, 고등학교·대학교(최종 학기)·방통대·야간 대학원생 참여 가능)
②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③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통계청 "시간제 근로자" 정의 :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예)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

〈2017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중위150%(B)	**2,479,397**	4,221,674	5,461,373	6,701,070	7,940,768	9,180,467
보험료 (B*0.0306)	75,870	129,183	167,118	205,053	242,987	280,922

※ 중위소득(A)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7년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16.7.22.)
※ 0.0306 : '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요율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은 중위소득 60%×0.0306적용(직장·지역가입자 동일 적용)

□ 지원내용

● 월 50만원,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월50만원 지원 금액 산출근거〉**

① **'○○○청년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17.1월) : 청년들이 구직활동 시 필요한 필요경비가 **매월 약44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

② **서울연구원 「청년정책 연구조사」**('16년) 결과 :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매월 약5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

③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13.11월) : 구직지원 참여수당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11년 월2,032천원)의 20%, 최저임금('11년 월903천원)의 44% 수준인 **월40만원 정도**를 시행 첫해('11년)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며, **매년 임금인상률을 평균 5%**로 가정하여 **참여수당을 인상 조정**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액 (원)	394,000	413,700	434,385	456,104	478,909	502,855	**527,998**

□ 지원방법

● '○○○' 카드 발급, 현금지원이 아닌 카드형태로 사후 지원

※ 참여자의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해 사후에 보완적으로 온라인 검증 및 정산 실시

4.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전혀 없으며, ○○○ 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은 크지 않음
- 본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도내 다른 제도의 **'예산변경사항 없음'**
- 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 영향 없음'**

②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자립도

- 2016년도 ○○○○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55.2%**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2	13,958,263	7,704,726	6,253,537	0	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

□ 재정자주도

- 2016년도 ○○○○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7.2%**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2	13,958,263	7,986,387	5,971,876	0	0

※ 자주재원 :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사회보장예산

- 2016년도 ○○○○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비율은 34.4%**임

〈 ○○○○ 재정 여건 진단 〉

연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
2016년도	55.2%	57.20%	34.4%
2015년도	53.6%	55.00%	34.7%
2014년도	53.7%	56.00%	32.3%
2013년도	60.10%	62.20%	31.7%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지원체계)** ○○○○ 및 ○○○○재단 등 민·관 협력체계로 운영
  - ○○○○ : 총괄운영·관리, ○○○○재단 지도·감독, 지원자 총괄 관리 등
  - ○○○○○○**재단 :**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 프로그램 운영·관리, 매니저 선발·운영, 지원자 관리 등 사업운영, 현장연계·협력 등

방침수립		참가자 모집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	⇨	○○○○○재단	⇨	선정심사위원회	⇨	재단·금융기관
('17.7월)		('17.9월)		('17.9-10월)		('17.9월 이후)

- **(서비스 전달체계)** 온라인 신청 접수, 서류심사, 오디션 실시, 지원금 지급 등 **고용서비스 일체**를 ○○○○○○재단에서 **원스톱으로 진행**

온라인 신 청		자격심사 (적격여부)		서류심사 (정성평가)		구직지원금 지 급		원스톱 고용서비스
▸ 도내1년 이상 거주 만18~34세 ▸ 신청서/증빙 서류 접수	➜	▸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 각종 시스템 조회	➜	▸ 구직활동 계획서 등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구직활동계획서를 토대로 개인별 구직활동범위 인정 ▸ 월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	▸ 고용지원 플랫폼 연계, 온라인 상담 ▸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재단		재단		재단		재단		재단

- **(사례관리) 전담 상담사**가 **온라인(고용지원플랫폼)** 및 **오프라인**에서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소요예산 (억)	185	45	70	70
지원인원 (명)	5,000	1,000	2,000	2,000

※ 2017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 결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 :** ○○○○ 100% 예산으로 조달 ('17년 일반회계 165억원)
- **정책의 지속가능성 :** 기 사업은 **민선6기 대표적인** ○○**합의과제**이며, **전액** ○○**비 100%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지속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부 록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 협의요청서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내용이 협의요청양식에 따라 알맞게 작성된 지자체 사업 중 일부내용을 수정·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 이해 목적 외 사용금지**(예, 동일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 요청 등)

(변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시 추가지원(예외지원확대)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1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보건의료 091)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출산 시)**	
	횟수	총 1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정보원)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100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3,399 명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비활용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5">주요 내용</th></tr>
<tr><td colspan="2">변경예정일</td><td colspan="5">2018.01.01.(협의요청일 2017.10)</td></tr>
<tr><td colspan="2">제도 변경사유</td><td colspan="5">정부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 대상 사업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가구가 적어 이를 보완하고자 ○○○는 2017년부터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지원 확대, 이후 점진적인 대상범위 확대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지원하고자 함</td></tr>
<tr><td colspan="2">관련규정</td><td colspan="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td></tr>
<tr><td colspan="2">사업목적</td><td colspan="5">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td></tr>
<tr><td rowspan="5">지원 대상</td><td rowspan="2">선정기준</td><td>이전</td><td colspan="3">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u>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u>
※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td></tr>
<tr><td>이후</td><td colspan="3">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u>모든 출산가정의 산모</u>
※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td></tr>
<tr><td rowspan="3">대상규모</td><td rowspan="2">이전</td><td>2015년</td><td>2016년</td><td>2017년</td></tr>
<tr><td>-</td><td>-</td><td>4,029명</td></tr>
<tr><td rowspan="2">이후</td><td>2018년</td><td>2019년</td><td>2020년</td></tr>
<tr><td>6,795명</td><td>6,779명</td><td>6,846명</td></tr>
<tr><td rowspan="4">지원 내용</td><td rowspan="2">지원유형</td><td>이전</td><td colspan="3">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td></tr>
<tr><td>이후</td><td colspan="3">변동없음</td></tr>
<tr><td rowspan="2">지원수준</td><td>이전</td><td colspan="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정부지원금 중 출산순위가 둘째아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라형"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17년 기준 최소 501,000원~최대 1,418,000원)</td></tr>
<tr><td>이후</td><td colspan="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정부지원금 중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라형"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17년 기준 최소 278,000원~최대 1,418,000원)</td></tr>
<tr><td rowspan="4">전달 체계</td><td rowspan="2">지원절차</td><td>이전</td><td colspan="3">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예탁(보건소) →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 → 접수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보건소)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계약·본인부담금 납부(신청인) → 서비스 실시(제공기관) → 서비스 비용 지급(사회보장정보원)</td></tr>
<tr><td>이후</td><td colspan="3">변동없음</td></tr>
<tr><td rowspan="2">수행기관</td><td>이전</td><td colspan="3">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td></tr>
<tr><td>이후</td><td colspan="3">변동없음</td></tr>
<tr><td rowspan="5">소요 재원</td><td rowspan="3">총규모</td><td rowspan="2">이전
(변경 전 3년)</td><td>2015년</td><td>2016년</td><td>2017년</td></tr>
<tr><td>-</td><td>-</td><td>1,212,173천원</td></tr>
<tr><td rowspan="2">이후
(변경 후 3년)</td><td>2018년</td><td>2019년</td><td>2020년</td></tr>
<tr><td>1,972,966천원</td><td>1,997,266천원</td><td>2,049,019천원</td></tr>
<tr><td rowspan="2">재원별 규모</td><td>이전</td><td colspan="3">시비100%</td></tr>
<tr><td>이후</td><td colspan="3">변동없음</td></tr>
<tr><td rowspan="2">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td><td>필요 정보</td><td colspan="5">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건강보험 자격정보, 건강보험 납부금액, ○○○ 전입일</td></tr>
<tr><td>연계 방안</td><td colspan="5">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td></tr>
</table>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 필요성

● **비싼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 2016년 12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은 234만원(우리시 258만원)으로 출산가정에 큰 부담이지만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
- 민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산모·신생아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 및 안전위험 등의 위험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하고자 함.

●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

- 기혼 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출산정책 욕구도 조사 결과 **출산지원 분야의 최우선 정책은 산후도우미 등 지원**이 69.7%로 매우 높음.('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산지원 정책욕구도 조사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원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65%이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가구가 적어 **기존 제도로는 출산지원 욕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
- 정책욕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기준 금액이 낮아 지원율[1]이 '15년 9.7%, '16년 13.6%에 불과, **정책 욕구도 충족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지역의 특수성

● ○○○는 빠른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농복합도시로 ○○○ ○○개 시·군 가운데 출생아수가 세 번째로 많고('16년 기준 8,288명), 가임기여성(20~44세)의 수가 네 번째로 많아('16년 186,008명)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

1) 지원율 $= \frac{\text{지원자수}}{\text{출생아수}} \times 100$, ('15년 지원율 $= \frac{\text{지원자수 } 898\text{명}}{\text{출생아수 } 9,296\text{명}} \times 100$, '16년 지원율$= \frac{\text{지원자수 } 1,136\text{명}}{\text{출생아수 } 8,364\text{명}} \times 100$)

- ○○○는 ○○○ 면적의 79%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지만 ○개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으며,(○○시 전체인구의 23.4%) 하루 평균 5.2명이 출생하는데 반해 산후조리원은 3개소(53객실)로 매우 부족한 상황.
- ○○○는 하루 평균 8.6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총 7개의 산후조리원(총 129객실)이 있음. 3개구 가운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율이 8.7%(2016년 기준)로 매우 낮음.
- '16년 12월말 기준 ○○○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일반실 2주 기준, 단태아) 259만원으로 ○○○ 00개 시·군·구 가운데 4번째로 비싸고(1위 ○○시, 2위 ○○시, 3위 ○○시), 전국 130개 시·군·구 가운데 27번째로 많다.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16. 12월 기준))
- ○○○는 2017년부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지원 하였는데, 지원율이 전년대비 12.7% 상승, 또한 소득기준이 점차 완화[2]되어 지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에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 산후조리원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 이용비용이 높고, 화재발생 및 신생아 집단감염 등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가계의 경제비용을 분담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와 급여내용이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접수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 차단 및 유사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유사서비스 포기 동의서" 징구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조정('15~'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지원율: 9.7%)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지원율: 13.6%)	▶ '17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8월말 지원율 26.3%)

-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급여형식으로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의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산(예정)후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이혼한 부모에게 출산 전·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사업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돕는 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최소 39%~최대 88%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출산지원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며,
- ○○○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도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비용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의 목적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table>
<tr><th>항 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대상자</td><td><u>기준중위소득80%를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u>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td><td><u>기준중위소득8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u>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td></tr>
<tr><td>급여수준</td><td>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출산순위</th><th colspan="3">지 원 금 (원)</th></tr>
<tr><th>단축</th><th>표준</th><th>연장</th></tr>
<tr><td rowspan="2">단태아</td><td>둘째아</td><td>501,000
(10일)</td><td>626,000
(15일)</td><td>709,000
(20일)</td></tr>
<tr><td>셋째아 이상</td><td>751,000
(15일)</td><td>834,000
(20일)</td><td>886,000
(25일)</td></tr>
<tr><td rowspan="2">쌍태아</td><td>둘째아</td><td>679,000
(10일)</td><td>848,000
(15일)</td><td>961,000
(20일)</td></tr>
<tr><td>셋째아 이상</td><td>916,000
(15일)</td><td>1,018,000
(20일)</td><td>1,081,000
(25일)</td></tr>
<tr><td colspan="2">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td><td>1,126,000
(15일)</td><td>1,251,000
(20일)</td><td>1,418,000
(25일)</td></tr>
</table>
</td><td>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출산순위</th><th colspan="3">지 원 금 (원)</th></tr>
<tr><th>단축</th><th>표준</th><th>연장</th></tr>
<tr><td rowspan="3">단태아</td><td>첫째아</td><td>278,000
(5일)</td><td>464,000
(10일)</td><td>591,000
(15일)</td></tr>
<tr><td>둘째아</td><td>501,000
(10일)</td><td>626,000
(15일)</td><td>709,000
(20일)</td></tr>
<tr><td>셋째아 이상</td><td>751,000
(15일)</td><td>834,000
(20일)</td><td>886,000
(25일)</td></tr>
<tr><td rowspan="2">쌍태아</td><td>둘째아</td><td>679,000
(10일)</td><td>848,000
(15일)</td><td>961,000
(20일)</td></tr>
<tr><td>셋째아 이상</td><td>916,000
(15일)</td><td>1,018,000
(20일)</td><td>1,081,000
(25일)</td></tr>
<tr><td>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td><td>1,126,000
(15일)</td><td>1,251,000
(20일)</td><td>1,418,000
(25일)</td></tr>
</table>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가격 중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자 지원금에 따름.
</td></tr>
</table>

- 서비스 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표준서비스, 1주 5일, 1일 9시간 제공(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변동없음)**
- 급여 유형 : 국민행복카드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변동없음)**
- 조사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산모의 ○○○ 전입일 확인 **(변동없음)**

● 향후 5년간 대상자 규모

- ○○○ 5년간 장래인구추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인구수		975,746	991,126	1,006,588	1,017,962	1,028,752	1,038,731	1,046,522	1,053,743
출생아수 합계		9,296	8,364	8,153	8,042	8,024	8,102	8,163	8,114
단태아	소 계	8,964	8,065	7,862	7,754	7,737	7,812	7,871	7,824
	첫째자녀	4,507	4,055	3,953	3,899	3,890	3,928	3,958	3,934
	둘째자녀	3,629	3,265	3,183	3,139	3,132	3,163	3,186	3,167
	셋째자녀 이상	791	711	694	684	683	689	694	690
	미상	37	34	32	32	32	32	33	33
쌍생아(쌍)	소 계	161	145	141	140	139	141	142	141
	둘째자녀	115	104	101	100	100	101	102	101
	셋째자녀 이상	46	41	40	40	39	40	40	40
삼태아이상(쌍)		3	3	3	3	3	3	3	3

1) ○○○ 인구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2017), 주요인구지표(중위 추계) 중 ○○○ 인구성장율(%) 적용 ('17년 1.56%, '18년 1.13%, '19년 1.06%, '20년 0.97%, '21년 0.75%, '22년 0.69%)

2) 출생아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국(2016),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산율 현수준 추계) 중 출생율(인구천명당) 적용 ('17년 8.1, '18년 7.9, '19년 7.8, '20년 7.8, '21년 7.8, '22년 7.7)

3) 단태아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산순위별 출생 중 2016년 ○○○ 출산순위별 비율 적용 (첫째자녀 50.3%, 둘째자녀 40.5%, 셋째자녀 이상 8.8%, 미상 0.4%)

4) 쌍생아 출생아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쌍태아 및 월별 출생 중 '15년 ○○○ 출생아수 대비 쌍생아 비율 3.47% 적용

5) 쌍생아 출산순위별 비율 : ○○○ 2017년 7월말 기준, 바우처 신청자 중 쌍생아의 출산순위 비율 적용(둘째자녀71.69%, 셋째자녀 이상 28.3%)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 대상자 규모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생아수	국비지원	예외지원	출생아수	국비지원	예외지원	출생아수	국비지원	예외지원	출생아수	국비지원	예외지원	출생아수	국비지원	예외지원
대상자수		7,865	1,070	**6,795**	7,847	1,068	**6,779**	7,924	1,078	**6,846**	7,983	1,085	**6,898**	7,935	1,080	**6,855**
단태아	소 계	7,722	1,050	6,672	7,705	1,048	6,657	7,780	1,058	6,722	7,838	1,065	6,773	7,791	1,060	6,731
	첫째자녀	3,899	530	3,369	3,890	529	3,361	3,928	534	3,394	3,958	538	3,420	3,934	535	3,399
	둘째자녀	3,139	427	2,712	3,132	426	2,706	3,163	430	2,733	3,186	433	2,753	3,167	431	2,736
	셋째자녀 이상	684	93	591	683	93	590	689	94	595	694	94	600	690	94	596
쌍생아(쌍)	소 계	140	19	121	139	19	120	141	19	122	142	19	123	141	19	122
	둘째자녀	100	14	86	100	14	86	101	14	87	102	14	88	101	14	87
	셋째자녀 이상	40	5	35	39	5	34	40	5	35	40	5	35	40	5	35
삼태아이상(쌍)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 대상자수 = 출생아수 - 국비지원자수(총 출생아수 중 2016년 지원율 13.6% 적용)

- 예상 지원자수 (이용률 50%적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수		**3,399**	**3,390**	**3,425**	**3,450**	**3,429**
단태아	소 계	3,337	3,329	3,362	3,387	3,366
	첫째자녀	1,685	1,681	1,697	1,710	1,700
	둘째자녀	1,356	1,353	1,367	1,377	1,368
	셋째자녀이상	296	295	298	300	298
쌍생아(쌍)	소 계	61	60	62	62	62
	둘째자녀	43	43	44	44	44
	셋째자녀이상	18	17	18	18	18
삼태아이상(쌍)		1	1	1	1	1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소요예산 : **약 19억 7,296만 6천원**
- **예상지원자수 : 총 3,399명**(단태아 3,337명, 쌍태아 이상 62명 / 이용률 50%로 산출)

※ 본인부담금(34~61%)수반 및 대상자 거주기간 제한(1년 이상) 제한으로 서비스 이용률 50%적용

- ○○○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번째로 높고 2017년 채무제로 선언 후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2017년 둘째자녀 확대지원을 위해 12억 1,200만원 자체예산을 확보하였고, 2018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관련부서와 20억 이상 자체예산 편성에 잠정 협의하였으므로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모자보건사업이 대부분 소득기준이 있고(청각선별검사 쿠폰발급: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영양플러스사업: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출생아수 (A)	국가지원 (B)	예외지원 (C=A-B *50%)	**이용비율(%)			산출인원(명)			지원금액(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총 계		7,865	1,070	3,399	32	30	38	724	1,441	1,234	393,679	751,445	827,842
단태아	소 계	7,722	1,050	3,337	21	43	36	712	1,428	1,197	384,109	739,338	791,325
	첫째자녀	3,899	530	1,685	4	62	35	61	1,039	585	16,958	482,096	345,735
	둘째자녀	3,139	427	1,356	36	24	40	487	323	546	243,987	202,198	387,114
	셋째자녀 이상	684	93	296	55	22	22	164	66	66	123,164	55,044	58,476
쌍생아(쌍)	소 계	140	19	61	19	19	62	12	12	37	9,570	10,856	36,517
	둘째자녀	100	14	43	13	18	68	6	8	29	4,074	6,784	27,869
	셋째자녀 이상	40	5	18	33	20	47	6	4	8	5,496	4,072	8,648
삼태아이상(쌍)		3	1	1	–	100	–	–	1	–	–	1,251	–
합 계									**3,399명**			**1,972,966천원**	

* 본인부담금(34~61%)수반 및 대상자 거주기간(180일 이상) 제한으로 서비스 이용률 60% 적용

** 이용비율(%) : 2017년 7월 말 기준, 태아유형별, 출산순위별 서비스 이용자수 비율 적용

✔ 2013~20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때 지원율 약 8%
✔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일 때 지원율 약 11%
✔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지원율 약 14%
✔ 2017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둘째자녀 출산가정 확대, 7월말 기준 지원율 약 26%

②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자립도 : 2016년도 우리 ○○○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 62%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00 (50.26)	1,881,559 (1,881,559)	1,166,623 (945,664)	714,936	0	0 (220,959)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3.79	61.44	60.75 (54.82)	**61.92 (54.78)**	63.42 (58.10)
최종예산	60.52	62.50	58.92 (50.29)	**62.00 (50.26)**	-

☞ 우리시는 자체세입액이 높은 편으로 재정자립도가 63.42%로 유사단체 평균 51.46%에 비해 11.96%높음.

□ 재정자주도 : 2016년도 우리 ○○○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 75.17%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5.17% (63.43)	1,881,559 (1,881,559)	1,414,428 (1,193,468)	467,132	0	0 (220,959)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78.25	74.14	73.19 (67.26)	**74.80 (67.66)**	75.39 (70.08)
최종예산	74.52	75.18	74.95 (66.32)	**75.17 (63.43)**	-

☞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5.99% 높은 75.39%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음.

□ 기능별 세출총괄표(2016년 본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율
세출	계	15,107	100
	일반공공행정	1,346	8.91
	공공질서 및 안전	107	0.71
	교육	307	2.03
	문화 및 관광	855	5.66
	환경보호	1,063	7.04
	사회복지	4,380	28.99
	보건	314	2.08
	농림해양수산	420	2.78
	산업중소기업	92	0.61
	수송 및 교통	2,863	18.95
	국토 및 지역개발	1,007	6.67
	예비비	656	4.34
	기타	1,697	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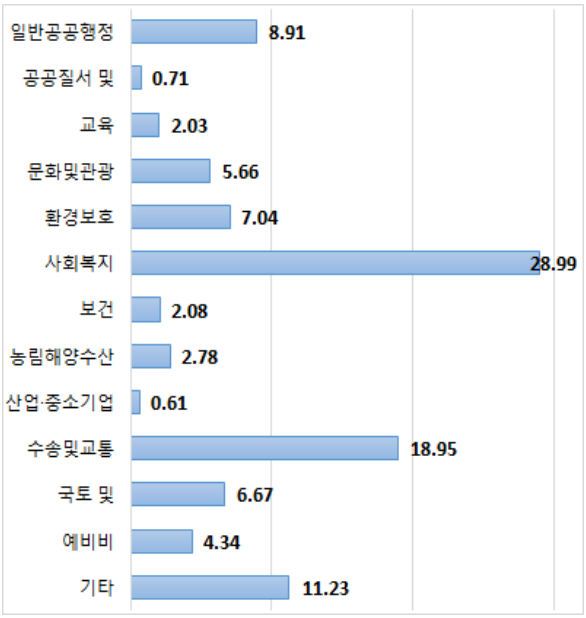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없음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입일 확인서류 제출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출산 순위 확인 • ○○○ 전입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 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상담	신청인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후 해당기관과 상담 • 상품선택(선택권 행사),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생성	제공기관	• 신청인과 계약체결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사항 등록
서비스 이용	신청인	• 서비스 개시일부터 선택 상품기간동안 바우처 이용 • 제공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바우처 카드로 비용 결제
비용 예탁	보건소	• 서비스비용 중 지원금액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비용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 계좌로 서비스비용 지급

● 확대지원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 부담 증가 및 제공인력 부족

- 제공업체와 간담회 개최, 확대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인력 채용 협조

※ 현재 등록 제공기관 20개소, 제공인력 354명

○○구		○○구		○○구		○○구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20개소	354명	5개소	116명	11개소	168명	4개소	70명

-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 보건소별 인력 증원 요청 ☞ 인사부서와 협의 후 인력 충원
- 제도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 필요

필요 정보 항목	기 능
신청자 및 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열람 대체 및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확인
대상자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수 산정 및 건강보험료 조회 등에 필요
대상자 및 대상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부과액	예외지원 대상여부 확인
건강보험 산정구분(직장/지역)	예외지원 대상여부 확인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	바우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국민행복카드 보유여부 조회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재 원 : 일반회계, 시비100%
- 제도 변경 향후 5년간 소요예산

(단위 : 명/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단태아	소 계	3,337	1,914,772	3,329	1,939,244	3,362	1,988,084	3,387	2,032,888	3,366	2,050,220
	첫째자녀	1,685	844,789	1,681	855,558	1,697	876,421	1,710	896,262	1,700	903,774
	둘째자녀	1,356	833,299	1,353	844,244	1,367	866,167	1,377	885,783	1,368	893,396
	셋째자녀 이상	296	236,684	295	239,442	298	245,496	300	250,843	298	253,050
쌍생아(쌍)	소 계	61	56,943	60	56,752	62	59,646	62	60,544	62	61,448
	둘째자녀	43	38,727	43	39,297	44	40,886	44	41,500	44	42,120
	셋째자녀 이상	18	18,216	17	17,455	18	18,760	18	19,044	18	19,328
삼태아이상(쌍)		1	1,251	1	1,270	1	1,289	1	1,308	1	1,328
합계(명, 천원)		**3,399**	**1,972,966**	**3,390**	**1,997,266**	**3,425**	**2,049,019**	**3,450**	**2,094,740**	**3,429**	**2,112,996**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중 서비스 물가상승률 1.5% 반영('17년 4월 기준)

● 제도 변경 전·후 예산 증감수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요 예산 (천원)	변경 전	1,128,177	1,141,708	1,172,598	1,198,478	1,209,222
	변경 후	1,972,966	1,997,266	2,049,019	2,094,740	2,112,996
증감률(%)		74.9%	74.9%	74.7%	74.8%	74.7%

● ○○○는 2017년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모두 상환하여 채무제로 도시로 선언하였고, 계층별 복지증진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사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됨.

● 저출산 극복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재정 분담을 위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건의

협의제도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15층
  (전화 02-6020-3331~9, 팩스 02-6020-3309)

■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자료 활용**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 검색 및 활용
  (메인화면 → 사회보장정보 → 발간물)
- 시스템 주소 : http://www.ssc.go.kr/main.tiles